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19-225

www.kcpi.or.kr

2019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어린이집용

보건복지부 KCPI 한국보육진흥원

2019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CONTENTS

Ⅰ.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1. 추진배경 ····· 3
2. 추진경과 ····· 7
3. 추진목적 ····· 8
4. 주요내용 ····· 9

Ⅱ. 어린이집 평가 운영

1. 일반사항 ····· 15
2. 운영체계 ····· 16
3. 평가지표 ····· 55

Ⅲ.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71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113
영역 3. 건강·안전 ····· 143
영역 4. 교직원 ····· 191

Ⅳ. 부록

1.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안내 ····· 217
2.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안내 ····· 243

Ⅰ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추진목적
4. 주요내용

Ⅰ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1. 추진배경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다. 평가제 시행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추진되어 온 어린이집 질 관리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시행 경과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보육서비스의 실제를 제시하고 질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부모의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체계를 위한 질 관리 기제로 작동하여 왔다[1]. 제1차 평가인증(′06~′09), 2차 지표와 3차 시범지표를 적용한 제2차 평가인증(′10~′17.10.), 통합지표를 적용한 제3차 평가인증(′17.11.~′19.6.11.)을 거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제도 운영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변화하는 현장의 수준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지향해야 할 보육서비스의 바람직한 실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

1) 참고 : 한국보육진흥원(2017).「어린이집 평가인증 12년」, 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온기·원종욱·송신영(2013).「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서문희· 최윤경·엄지원(2012).「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표 1 ▌ 평가인증제도 시행 경과

구분		내용
도입	2003. 4. ~ 1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04.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범 운영	2005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1차 시행	2006 ~ 2009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2차 시행	2010 ~ 2017. 10.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2013. 9.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시행
	2014. 11.	3차 시범지표 적용
	2016. 6.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 발표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3차 시행	2017. 11. ~ 2019. 6.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 적용)

지자체의 지도점검 외에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기제가 없었던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보육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먼저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이 변하면서 영유아가 생활하기에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영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놀잇감이 충분하고 다양하게 갖추어졌다. 또한 인증 준비과정에서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대해 지표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실제를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교직원들의 전문성은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2].

2006년 본격 시행 이후 해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0년부터 인증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인증으로 진입한 어린이집의 인증통과율을 살펴보면 신규인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차 평가인증 참여를 통해 향상된 질적 수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평가인증 2차 시행에 대한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전문가, 부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2,188명)의 90.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평가인증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부분으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32.8%),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21.9%), '운영관리의 체계성'(18.1%),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15.1%) 순으로 응답함(한국보육진흥원. 2017.「어린이집 평가인증 12년」).

표 2 연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참여확정(A)	3,525	4,956	6,605	8,446	8,847	12,899	13,328	13,408	13,036	11,821	11,682	11,747	11,210
인증통과(B)	2,804	4,181	5,464	7,303	6,899	11,331	11,506	12,746	12,618	11,322	11,152	11,362	10,603
통과율(B/A)	79.5	84.4	82.7	86.5	78.0	87.8	86.3	95.1	96.8	95.8	95.5	96.7	94.6

주: 각 연도 말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임.

표 3 참여유형별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인증									
참여확정(C)	8,344	6,976	7,813	7,102	4,957	4,053	3,199	3,086	3,302
인증통과(D)	6,426	5,667	6,304	6,781	4,746	3,866	3,071	2,954	3,046
통과율(D/C)	77.0	81.2	80.7	95.5	95.7	95.4	96.0	95.7	92.2
재인증									
참여확정(E)	503	5,923	5,515	6,306	8,079	7,768	8,483	8,661	7,908
인증통과(F)	473	5,664	5,202	5,965	7,872	7,456	8,081	8,408	7,557
통과율(F/E)	94.0	95.6	94.3	94.6	97.4	96.0	95.3	97.1	95.6

주: 각 연도 말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임.

평가인증 이후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6년에는 3.6%에 불과하였던 인증 어린이집이 2009년 46.9%, 2014년 7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4월말 기준으로는 전체 어린이집 대비 83.0%가 인증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가인증제도가 보편화된 질 관리 기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평가인증 유지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4.
전체(A)	28,367	29,233	30,856	33,499	35,550	38,021	42,527	43,742	41,084	40,264	39,171	37,815
인증유지(B)	622	1,060	4,500	9,683	16,686	21,154	27,357	33,050	32,795	32,257	31,625	31,377
유지율(B/A)	2.2	3.6	14.6	28.9	46.9	55.6	64.3	75.6	79.8	80.1	80.7	83.0

주: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임.

각 연도별로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신규인증과 재인증 어린이집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인증 어린이집이 신규인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인증 과정이 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효과 적이며, 인증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후 관리 체계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1차 지표)

단위: 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89.6	87.1	88.6	87.6	86.7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임.

표 6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2차 지표)

단위: 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87.9	91.8	92.7	93.4	95.6	95.7	95.8	96.5
신규인증	87.7	91.5	92.7	92.9	94.8	95.2	95.2	96.0
재인증	90.2	92.2	92.7	94.0	96.1	96.0	96.1	96.8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임.

표 7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3차 시범지표)

단위: 점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92.8	94.1	96.0
신규인증	91.6	92.6	94.6
재인증	93.5	94.7	96.5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임.

2) 어린이집 평가제 전환

평가인증제도 도입 후 십 수 년이 지난 현재, 저출산 및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보육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모와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왔다.

반면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어 미인증 어린이집으로 인한 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으며, 최근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인권 및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국정과제 48-3)' 실현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다.

평가제 시행은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하여 단순한 제도 변화로서의 평가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추진경과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평가제 시행을 위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무평가제 시행방안」 연구용역[3]을 실시하여 평가제 운영체계와 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운영체계 및 지표(안)에 대해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부모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최종 논의되었으며, 이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제 시행을 위한 운영체계 및 지표가 최종 확정되었다.

---

3) 연구진 : 이완정(인하대학교), 권혜진(나사렛대학교), 신나리(충북대학교), 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 손승희(한남대학교), 장혜진(대구대학교)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평가제 추진경과

구분	내용
2018.12.11.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
2018.12.18. ~ 2019.3.31.	평가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2019.2.26. ~ 2019.4.4.	의견수렴 실시(공청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협의체)
2019.4.15.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9.6.12.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3. 추진목적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주요내용

1) 주요 특징

평가제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결과등급별로 질 관리가 지속되도록 설계되었다. 어린이집에는 평가의무가 부여되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따라 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을 시 그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특징을 평가인증제와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9▐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특징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대상	•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평가절차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4개월) 신청(어린이집) → 기본사항 확인(지자체) →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어린이집) → 현장평가(현장 관찰자) → 종합평가, 결과통보(종합평가 위원회)	•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3개월) 대상통보(어린이집)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지자체, 어린이집) → 현장평가(현장관찰자) → 종합평가, 결과통보(종합평가 위원회)
	•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기본사항 : 필수항목 9개,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	•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평가결과	• 4등급(A, B, C, D), D등급 불인증	• 4등급(A, B, C, D)
평가주기	• (유효기간) 3년(A등급 1년 연장 가능)	•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결과공표	• 평가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이력 등 공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확인점검(무작위, 월 단위 시기 안내) – 확인방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 인증유효기간 종료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취소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C, D등급 의무 실시) – 확인점검(평가 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결과활용	•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 • 지도점검 연계(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2)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시작된다. 대상통보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 6개월 이전에,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 2개월 전에 통보된다. 확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보 익월부터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의 과정이 3개월 간 진행된다.

각 어린이집의 평가시기는 평가주기와 연계하여 정해지는데[4], 정해진 평가주기 외 신규 개원, 대표자 변경, 행정처분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해진 평가시기에 맞춰 통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에는 평가 참여수수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4) 기존 인증제의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평가시기를 맞추어 대상통보 됨.

3)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제3차 평가인증에서 적용하였던 통합지표[5]를 기반으로 하되, 어린이집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2020년 시행되는 개정 누리과정 및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맥락을 같이 하도록 세부내용을 반영하였다.

평가제 주요 평가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지표 간 항목 수 차이로 나타났던 등급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지표를 21지표에서 18지표로, 79항목에서 59항목으로 축소하였고 지표별 평가항목 수를 평균 3~4개로 균형 배치하였다.

둘째, '영유아 안전권리 존중', '놀이' 가치 강조를 통해 영유아 중심의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 권리 존중(1-1) 지표를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급·간식 위생 및 안전 항목 중 영유아의 등원부터 하원까지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8개)를 지정하여, 필수지표 또는 필수요소 충족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 스트레스 관리 관련 지표를 강조하고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항목을 강화하였다.

---

5)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을 기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개발된 지표로, 2017년 11월부터 적용됨.

| 표 10 | 평가인증지표와 평가지표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영역(4)	지표(21)	항목(79)	지표(18)	항목(59)
Ⅰ.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31 → 18)	1-1.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4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2
	1-2. 일과 운영	5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6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6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4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6. 평가	4		
	1-7. 일상생활	2	1-5. 보육과정 평가	3
	소계	31	소계	18
Ⅱ.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9 → 14)	2-1. 실내 공간 구성	5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3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2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소계	19	소계	14
Ⅲ. 건강·안전 (15 →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2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소계	15	소계	15
Ⅳ. 교직원 (14 → 12)	4-1. 원장의 리더십	4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4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소계	14	소계	12

* 3-2, 3-4, 3-5 지표 내 필수요소 8개 포함

Ⅱ 어린이집 평가 운영

1. 일반사항
2. 운영체계
3. 평가지표

Ⅱ 어린이집 평가 운영

1. 일반사항

1) 기본방향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며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2)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3)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평가과정 :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2.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과정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선정 및 통보로 시작되며,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1)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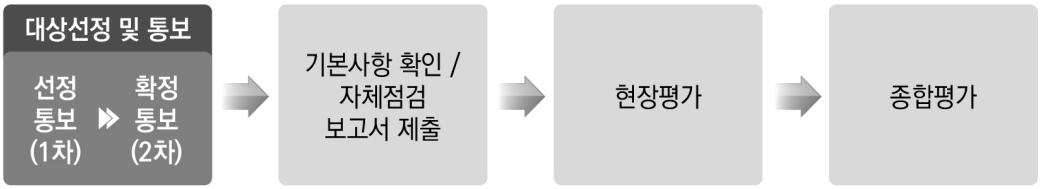

가.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의6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사유 발생 시 별도로 평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평가시기 통보(유효기간만료 2개월 전 현장평가)
  -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 단,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소재지가 변경(변경인가일)된 경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 단, 소재지 변경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후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종전 평가결과 유효

- 인증유지 어린이집이 행정처분 및 법 위반(처분일) 등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월 기준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 미인증 어린이집은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 '19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병행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집은 '19년 내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전환 후 3개월 이내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하고, 확정통보 월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통보 익월 기본사항 확인)

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평가일정을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 (통보시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 실시한다.

※ 평가추진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 (통보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개별 통보한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1차)하며, 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선정통보(1차)에 의해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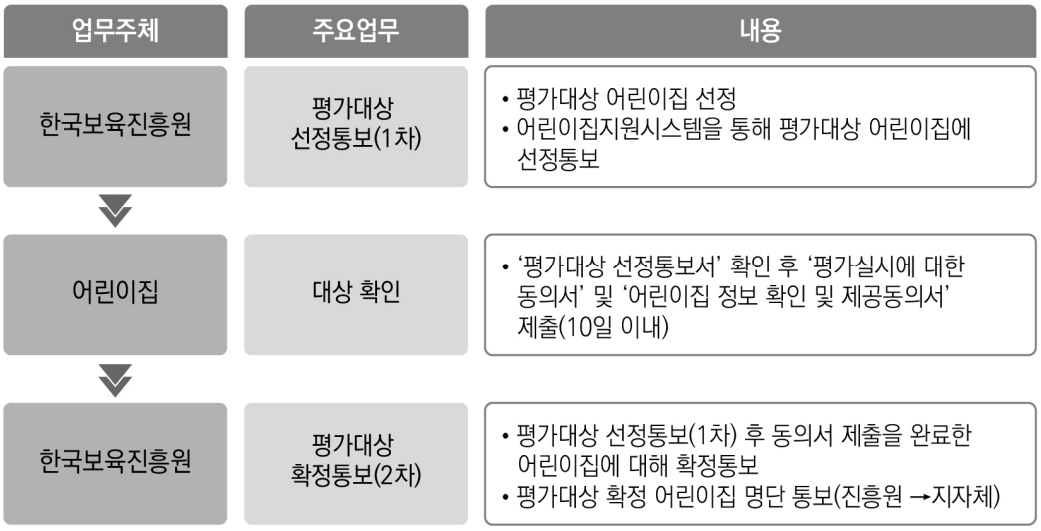

[그림 2]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업무흐름도

평가대상 확인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평가대상 확인 요망'을 클릭하여 평가대상 통보서 확인 및 동의서 제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 과정 확인 ⇨ [평가대상 확인 요망] 클릭 ⇨ 통보서 확인 및 동의서 제출

- 평가대상 통보서 확인 및 동의서 제출 시 어린이집의 현재 상태가 '평가대상 확인 완료'로 변경됨

다. 진행일정

평가 기수	평가대상	대상 선정 통보 (1차)	대상 확정 통보 (2차)	진행일정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1개월)	현장 평가 (1개월)	종합 평가 (1개월)	결과 통보
'19. 1기	'16. 신규인증 6기, 재인증 7기, 재참여 2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4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9. 2기	'16. 신규인증 7기, 재인증 8기, 재참여 3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5월 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 3기	'16. 신규인증 8기, 재인증 9기, 재참여 4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5월	9월	10월	11월	12월	'20. 1월
'19. 4기	'16. 신규인증 9기, 재인증 10기, 재참여 5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6월	10월	11월	12월	'20. 1월	'20. 2월
'19. 5기	'16. 신규인증 10기, 재인증 11기, 재참여 6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7월	11월	12월	'20. 1월	'20. 2월	'20. 3월
'20. 1기	'16. 재인증 12기, 재참여 7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8월	12월	'20. 1월	'20. 2월	'20. 3월	'20. 4월
'20. 2기	'17. 재인증 1기, 재참여 8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9월	'20. 1월	'20. 2월	'20. 4월 초	'20. 4월	'20. 5월
'20. 3기	'17. 신규인증 1기, 재인증 2기, 재인증 3기, 재참여 9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10월	'20. 2월	'20. 3월	'20. 4월	'20. 5월	'20. 6월
'20. 4기	'17. 신규인증 2기, 재인증 4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11월	'20. 3월	'20. 4월	'20. 5월	'20. 6월	'20. 7월
'20. 5기	'17. 신규인증 3기, 재인증 5기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12월	'20. 4월	'20. 5월	'20. 6월	'20. 7월	'20. 8월

※ 평가 진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라. 평가시기 조정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전·후로 평가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 평가시기 조정 희망어린이집은 평가대상 선정통보일(1차)로부터 익월 1개월 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조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사유 최종 확인 후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함

  ※ 단, 해당 월 평가 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대상)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 (인정 사유) 확정통보(2차) 월로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함,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이 외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평가시기 조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대상통보일(1차)로부터 익월 1개월 내 조정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시기 조정] 메뉴에서 희망 기수를 선택하고, 조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시기 조정 ⇨ 희망기수 선택 ⇨ 조정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첨부 ⇨ 신청 완료

- (결과확인)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사유 최종 확인 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

2) 1단계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단계에서 지자체(시·군·구)는 평가대상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은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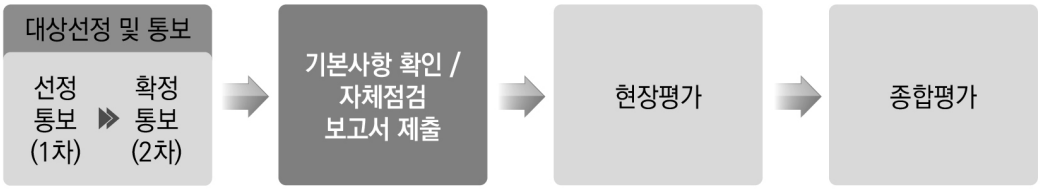

가. 기본사항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는 기본사항을 확인하여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한다.

-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업무
  - 시·군·구는 해당 기수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의 기본사항(사전점검사항 및 위반이력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에 통보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함

- 기본사항 확인 내용 : 사전점검사항(5항목),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함(미준수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사전점검사항 : 5항목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가입	준수	•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 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舊)법 적용
	미준수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참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참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함

- 위반이력사항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금고 이상의 형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의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방법

•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어린이집의 현재 상태로 확인(기본사항 확인 준수/미준수)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 과정 확인 ⇨ 나의상태(기본사항 확인 (준수/미준수))로 표시됨

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 및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된 어린이집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통보된 기한 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점검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자체점검보고서에는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을 작성함(부록1 참고)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제출함

  *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할 수 있음

자체점검보고서 입력방법

- 자체점검보고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을 클릭하여 입력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 과정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클릭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완료 이후에는 자체점검보고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출완료] 전 최종 점검 후 [제출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간 안내	•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및 기간 안내(진흥원 → 지자체)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간 안내(진흥원 → 어린이집)
시·도 시·군·구 / 어린이집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 및 입력 (어린이집)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기본사항 확인 및 결과 입력 (시·군·구 → 시·도 → 진흥원) • 자체점검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어린이집 → 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결과 확인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기본사항 결과 확인 - 사전점검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고 미준수 어린이집에 대해 개선 확인 요청(진흥원 → 시·도 → 시·군·구) - 위반이력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결과 확인

[그림 3]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업무흐름도

3) 2단계 : 현장평가

'현장평가' 단계에서는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평가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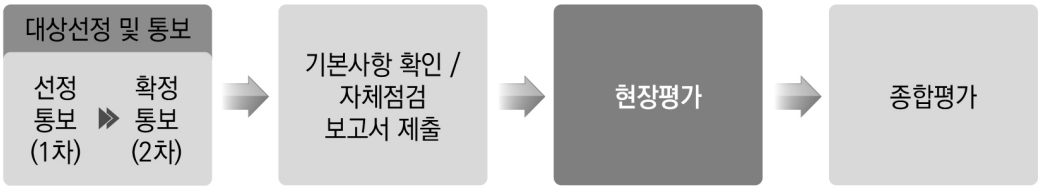

가. 현장평가 주간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함.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 보수교육, 상(喪)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

-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평가 주간을 현장평가월 1주일 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평가 주간 확인 방법

- 현장평가 주간 확인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현장평가주간 확인' 클릭하여 확인
  - 확인시기 : 기수별 현장평가월 1주일 전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 과정 확인 ⇨ 현장평가주간 확인의 [확인하기] 클릭

나.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는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1일간 실시한다.

※ 단, 어린이집 정·현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현장평가 시작 전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이해관계 발생 시, 평가를 중단하고 추후 현장관찰자를 재파견함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9:00~09:30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임

  ※ 필요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관찰자는 실명이 기재된 현장관찰자증을 패용함

  - 현장관찰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관찰자의 개인정보는 어린이집에 알리지 않음

- 현장관찰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한 후 현장평가를 시작함

  ※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현장관찰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인가공간)를 관찰함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찰반을 선정할 수 있음(영유아 모두 재원 시, 영아반과 유아반 각 1반씩 포함되어야 함)

  - 영아반과 유아반을 각각 2개반씩 무작위로 추첨 후, 어린이집 원장이 2개반을 최종 선정함

    ※ 원활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해 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등의 상황 발생 시 원감, 주임교사 등의 보육교직원이 관찰반을 대신 선정하여 진행하며,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과 관련하여 실내외 자유놀이 등 일과 전반에서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현장관찰자 3인 중 1인은 기록(문서) 검토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 확인 후 현장관찰자를 재파견함

* 방과 후 아동이 있는 경우의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현원의 2/3 이상

(예시) 현원 33명(종일반 영유아 25명, 방과 후 아동 8명)의 경우, 방과 후를 제외한 종일반 영유아 현원(25명)의 2/3 이상 → 따라서 25명의 2/3 이상 = 16명 이상

② 현장평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① 원아명단
- 평가 당일, 현장관찰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⑤ 임면사항 관련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⑥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 ※ 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임용되어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함
  - ※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보육사업안내 서식 참조)

⑦ 평가지표 관련 문서
- 예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식단표 등
  - ※ ①, ②, ③은 현장관찰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재정 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현장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기록(문서) 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 기록(문서) 확인 기간은 다음과 같음
  - 보육일지 :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 그 외의 기록(문서) :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기록 확인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 활동을 할 수 없다.

※ 어린이집에 미임용 교직원이 있는 경우, 현장관찰자와 원장은 미임용 교직원이 타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함
  - 작성 완료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공유(복사본 제공)

※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

※ 현장평가 시 확인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어린이집은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현장관찰자는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현장관찰자는 현장평가 후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평가 관련 자료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함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항목) 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장평가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한다.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한다.
-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 여부가 통보되지 않거나, 미개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단계에서 확인 후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한다.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생 여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구) 통보
▼		
시·군·구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확인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확인 및 개선결과 시·도 통보
▼		
시·도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통보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최종 확인 및 한국보육진흥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반영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확인 및 반영 * 단,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미개선 시 종합평가 단계에서 확인 후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그림 4]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업무흐름도

▌어린이집 운영기준 ▐

연번	항목	확인방법
1	영유아 재원사항	- 증빙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미등록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경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된 반과 다른 반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경우 •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하여 서로 다른 연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하여 혼합반 구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퇴소한 원아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원장 및 보육교사가 무자격인 경우 • 원장 및 보육교사가 미임용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교사, 대체교사 등 모두 포함 • 원장 및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경우 • 타 어린이집에 임용된 보육교직원(기타 보육교직원 포함)이 근무하는 경우

※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반 구성 및 영유아 재원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임의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다르게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현장관찰자 자격

①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한다.

※ 평가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종합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자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4) 3단계 : 종합평가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현장평가를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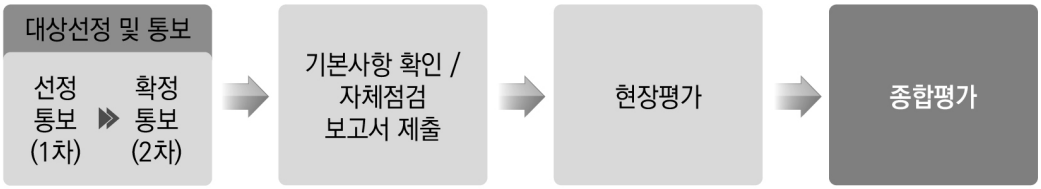

가.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종합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다.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음

나.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는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소위원회에서는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한다.
-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평가결과서에 제시한다.

◎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2단계) 종합평가 위원회	■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

※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

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인가변동사항 발생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조정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및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평가를 중단하며 평가주기 조정

변동사항 관련 업무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는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 발생 사실 확인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함
-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확정통보(2차)일 익월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함
-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통보받은 변동사항을 종합평가 시 반영하여 등급 결정 또는 평가과정 중단 등 후속조치함

  * 기존 인증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함

라. 등급 결정 및 평가주기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함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⑧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 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 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차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다만, 법 위반 및 행정처분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 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한다.

▌평가등급 기준 및 평가주기▐

등급구분(정의)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5) 결과 공표

가. 결과통보

○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등을 통해 통보한다.

○ 평가결과 통보 전

- 통보 전 어린이집 정보 확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는 어린이집 관리 및 결과통보, 평가 후 관리에 활용되므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함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방법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원장 및 대표자명 : 확인 후 수정은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요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 설치운영관리

- 보육교직원 현황 : 보육교직원 변동 사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메뉴에서 수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원장 휴대전화 번호 : 어린이집 원장의 휴대전화 번호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운영] - [설치운영관리] 메뉴에서 수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 설치운영관리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 평가결과 통보 전 어린이집에서는 변동사항 확인서 및 어린이집용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함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방법

- 결과통보 전 설문지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결과통보전 설문지 작성'을 클릭하여 입력
  - [변동사항 확인서] 평가대상 확정통보 후 행정처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어린이집용 설문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용으로 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결과통보전 설문지 작성] 클릭 ⇨ [변동사항 확인서] 입력 ⇨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

※ 평가결과 통보 전 변동사항 확인서,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이 모두 완료되어야 평가결과 확인 가능

평가결과 확인

-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등급 및 영역별 등급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평가결과 확인 방법

- 평가결과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및 개별 어린이집으로 통보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평가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 과정 확인 ⇨ [평가결과 확인] 클릭

나. 소명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이 가능하다.

- 평가결과 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이 가능함(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소명 절차

소명신청 ⇒ 사실조사(서면, 방문 등)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소명 결과

- 소명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함
- 최종 평가결과를 공표함

다.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

- (공표 시기) 결과통보 후 익월 1일

  ※ 평가제가 시행되는 '19.6.12. 이후 해당 결과를 공표(단,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 (공표 내용) 등급 구분 및 정의,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 평가결과서, 지역(시·군·구) 및 설립유형, 전국 어린이집 등급 분포 등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최종 결과공표함

  ※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은 지도점검대상 우선 선정

▌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	평가결과 A~D등급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평가 이후 법 위반·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평가 예정**
	신규개원	평가 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 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평가 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

라.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

6) 평가 후 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입력·제출한다.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점검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에는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을 작성함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대상이므로 해당 시기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는 평가결과 통보시기(상·하반기)에 따라 제출한다.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대상 (평가결과 A, B등급)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 시기	5.1. ~ 5.31.	11.1. ~ 11.30.

* 2019년 하반기부터 평가제 지표 적용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한다.

  ※ 2019년 상반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나. 사후방문지원(컨설팅)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후방문지원(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한다.

- (대상) 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의무 참여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내용)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 방문지원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등을 지원함
  - 어린이집에서는 향후 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지표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함

다. 평가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한다.

라. 확인점검

- 평가 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한다.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 (대상)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평가 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등

  ※ 대상의 선정기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결과활용)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체개선 후 재확인점검 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등급 조정, 사후방문지원을 연계한다.

※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함

※ 단, 2019년 9월부터 변경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 3월까지 인증유효기간 감축 또는 평가등급 조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함

◎ 확인점검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 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확인점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함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점검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함

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한다.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평가주기) 최하위 등급 조정 통보월로부터 2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시·군·구는 상기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중 최하위 등급 조정 대상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내용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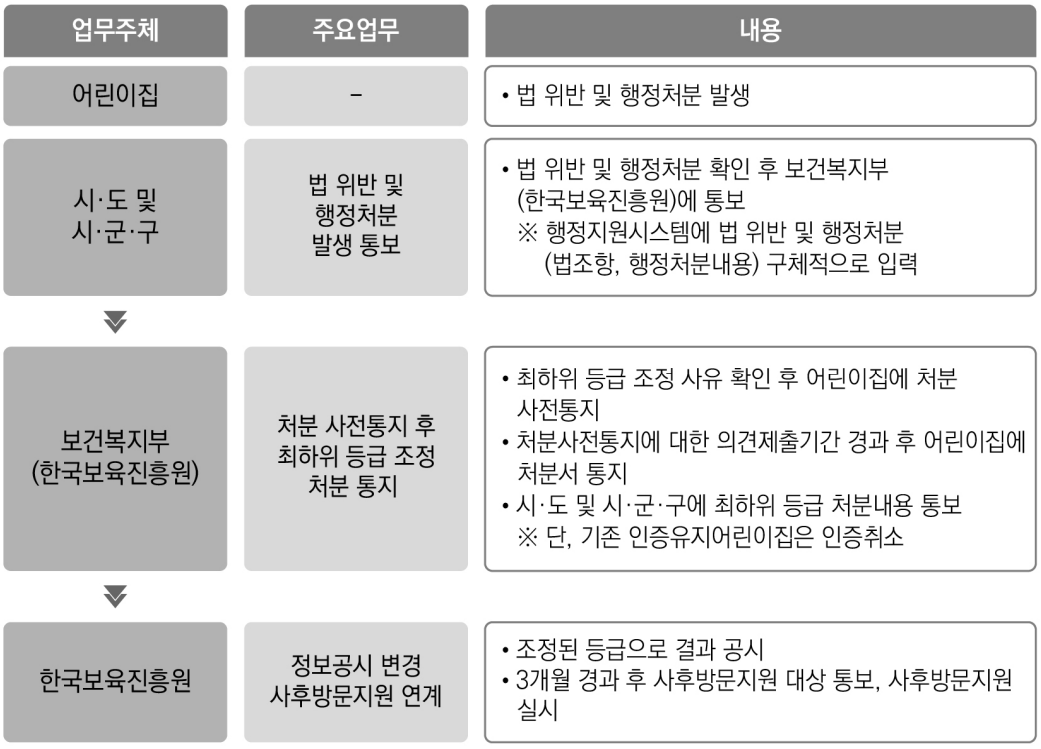

[그림 5] 최하위 등급 조정 절차 업무흐름도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제3자간 대표자간 변경 등 대표자 변경 사유 모두 포함

    ※ 2011.8.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단, 소재지 변경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후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종전 평가결과 유효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현장평가 진행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전환 후 3개월 이내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되며, 확정통보 월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통보 익월 기본사항 확인)

※ 기존 인증유지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함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포함) 즉시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를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즉시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평가대상 통보 절차를 진행함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포함)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포함)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 단, 인증유지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평가시기 통보

[그림 6] 평가주기 조정절차 업무흐름도

7)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법적 근거

-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 대상임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유

-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평가 또는 확인점검에 관련된 서류(자체점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의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직원(현장관찰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 한국보육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보고함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해 현장관찰자가 확인서 작성 및 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확인을 받음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거부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평가거부 사유를 현장관찰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직접 작성하고 현장관찰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서명하고 종료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추후 해당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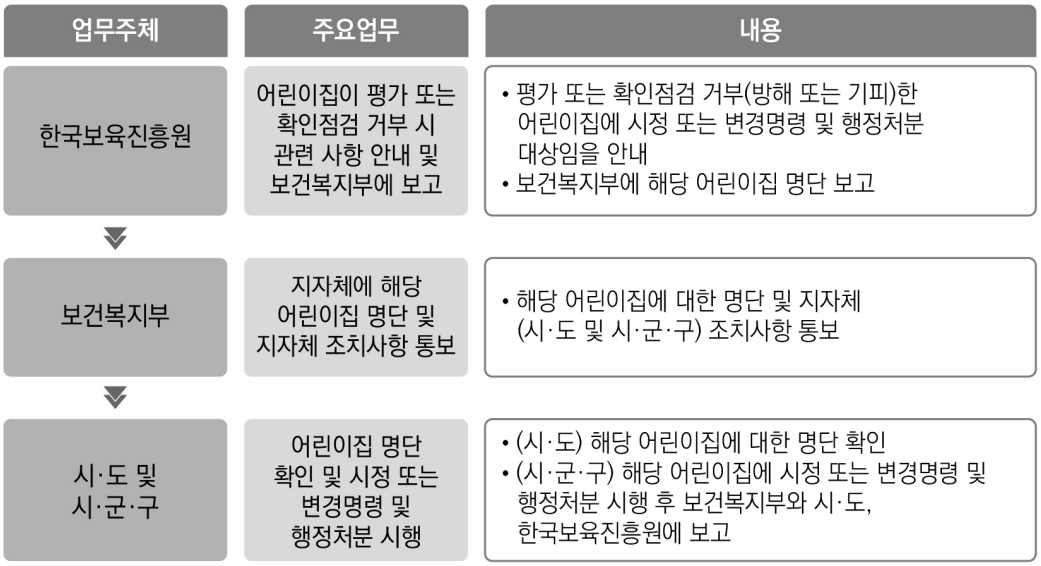

※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

[그림 7]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8) 경과조치

가. 적용 대상

- 평가제 시행에 따른 운영체계 및 지표는 2019년 9월 현장평가 대상인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 2019년 8월 현장평가 대상 어린이집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를 적용함

  - 평가인증제에 따른 확인방문은 2019년 4월까지 사유발생하여 2019년 5월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적용함

    ※ 다만, 2019년 5월 이후부터 평가제 시행 전까지(2019. 6. 11.)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평가등급(점수)을 유지하되 6개월 경과 시점에 현장평가 진행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

- 2019년 5월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는 인증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까지 평가결과가 유효하며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함
- 확인점검은 2019년 9월부터 평가제 운영체계 및 지표를 적용함
- 2019년 상반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함

나.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한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확정 및 관련 조치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처분확정 사실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를 요청함

※ 인증취소 처분시점부터 인증취소 효력 발생

-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시·군·구로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반납함

⑤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취소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함

[그림 8]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인증유효기간 종료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인증유효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함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조치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④ 시·군·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함

※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대표자 변경,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통보 (시·군·구→시·도→한국보육진흥원)

[그림 9]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3. 평가지표

1)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가. 구성 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평가요소) 순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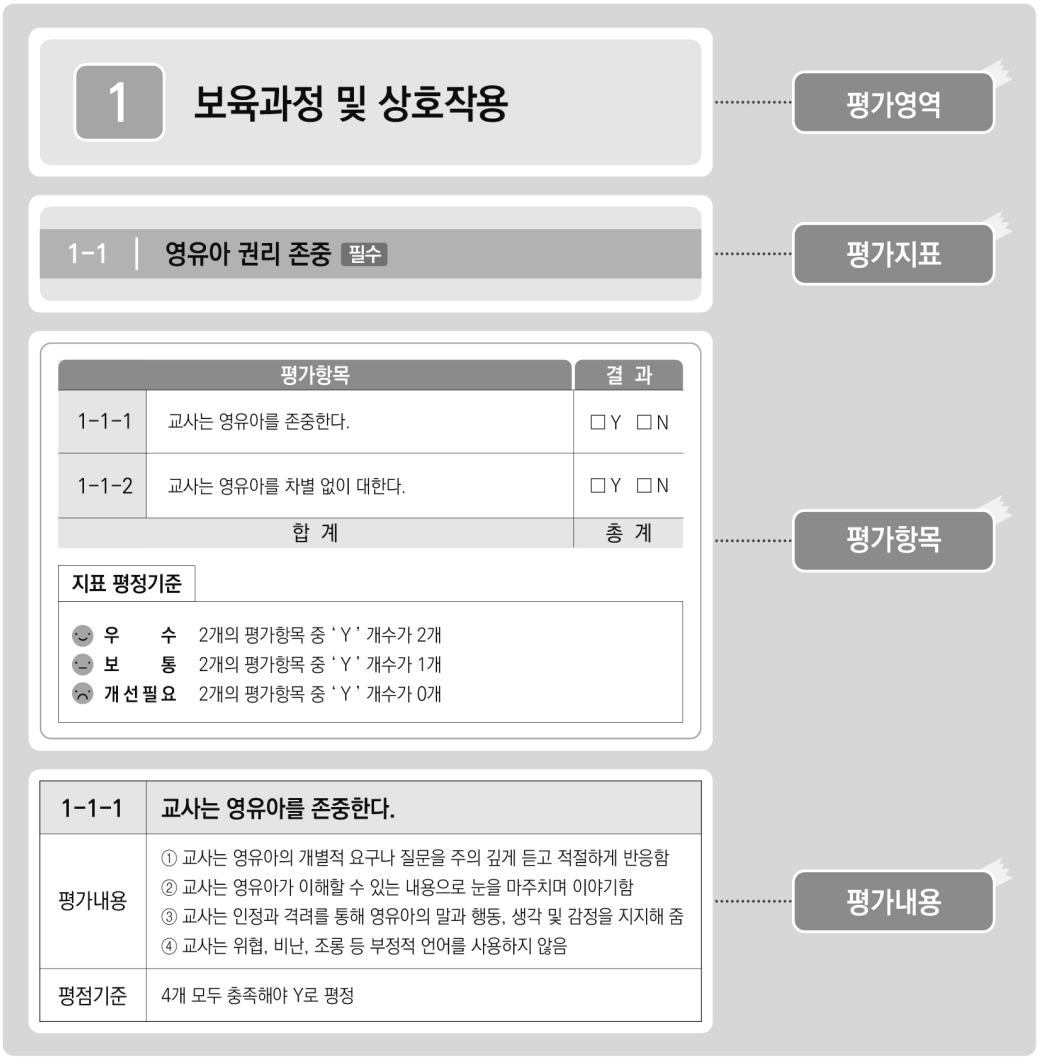

나. 평가방법

평가지표의 평가방법은 관찰, 면담, 기록 확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관찰	•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대한 관찰을 진행함 • 등원에서 하원까지 일과 동안 이루어짐
	면담	• 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 평가지표(항목·요소)에 관한 실행 여부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함
	기록	• 평가지표(항목·요소)에서 실행 여부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기록을 확인함

면담의 경우, 면담 대상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 (원장 / 교사 / 조리원 / 운전자 / 교육참여자) : '원장 / 교사 / 조리원 / 운전자 /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 (공통) :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기록 관련 확인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보육일지 :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 그 외의 기록 :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 단, 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표의 경우 전년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용어설명

'종일제 보육교사'란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 반을 맡고 있지 않으나, 담임교사로 등록된 보육교사를 포함함

● 평가대상 중 '장애아전문'과 '장애영유아'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 장애아전문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정함

〈예〉

1-2-4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평가내용	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영아 만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 만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유아 매일 1시간 이상 장애아전문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장애영유아 : 장애아전문 뿐만 아니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된 경우)도 평정대상에 포함됨

〈예〉

1-2-6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평가내용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음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장애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와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하고 있음

2)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수

평가영역(항목수)	평가지표	평가항목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18)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놀이 및 활동지원	3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보육과정 평가	3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3. 건강·안전(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4. 교직원(12)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 3-2, 3-4, 3-5 지표 내 필수요소 8개 포함

어린이집 등급평정 방식

• **(평가지표)** 각 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항목은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충족(Y)' 또는 '미충족(N)'에 체크

평가항목 수	지표 평정		
	충족(Y) 항목 수		
2	2개	1개	0개
3	3개	2개	1개 이하
4	4개	2~3개	1개 이하
5	5개	3~4개	2개 이하
6	6개	3~5개	2개 이하
	▼	▼	▼
	우수	보통	개선필요

• **(평가영역)** 각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개선필요'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등급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개선필요' 등급 부여

평가영역(지표 수)	영역 평정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5)	'우수' 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지표 1개 이상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4)	'우수' 지표 3개 이상		
3. 건강·안전(5)	'우수' 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4. 교직원(4)	'우수' 지표 3개 이상		
	▼	▼	▼
	우수	보통	개선필요

• **(어린이집 등급)** 4개 평가영역 중 '우수', '개선필요' 등급 개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 B, C, D) 중 1개 부여

〈평가등급 기준 및 평가주기〉

등급구분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모두 충족)	3년
B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1.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18)	1-1 영유아 권리 존중 (2) 필수	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2개, 보통 : 'Y'가 1개, 개선필요 : 'Y'가 0개
	1-2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6)	1.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2.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5.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6.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지표 등급	(일반) 우수 : 'Y'가 5개, 보통 : 'Y'가 3~4개, 개선필요 : 'Y'가 2개 이하 (장애) 우수 : 'Y'가 6개, 보통 : 'Y'가 3~5개, 개선필요 : 'Y'가 2개 이하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
		3.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1.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18)	1-4 영유아 간 상호 작용 지원 (4)	1.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2.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방식을 사용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4개, 보통 : ‘Y’가 2~3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1-5 보육 과정 평가 (3)	1.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내용을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한다.
		2. 개별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3.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1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4개 이상(필수 포함)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2.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1. 보육실 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하여 구성한다.
		2.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다.
		3.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4.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4개, 보통 : 'Y'가 2~3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2.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3.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2-3 기관 운영 (4)	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
		3.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4.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4개, 보통 : 'Y'가 2~3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2.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14)	2-4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3)	1.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다양한 부모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2.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2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3개 이상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안전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2 급·간식 (3)	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안전 (15)	3-4 등·하원의 안전 (3)	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5 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3)	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4개 이상(필수 포함)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4. 교직원 (12)	4-1 원장의 리더십 (3)	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2 보육 교직원의 근무 환경 (3)	1. 교사를 위한 별도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2.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3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1.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4. 교직원 (12)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보통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3개 이상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Ⅲ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3. 건강·안전
영역 4. 교직원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과정은 보육철학(목적 및 목표), 보육계획(내용), 보육실행(교수·학습 방법), 보육평가로 구성된다. 즉, 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영유아에게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경험하는 보육의 질은 보육과정 운영의 질에 달려있는 만큼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으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은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보육목적 및 목표, 내용, 실행, 평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필수적으로 실천하고,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보육철학을 토대로 표준보육과정,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등을 반영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육계획은 영유아가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자유놀이와 바깥놀이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루 일과는 영유아의 자발적 놀이, 다양한 활동, 일상생활 경험이 균형 있게 이루어 지도록 운영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 및 활동자료, 공간,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또래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도 적절히 개입하도록 한다. 특히,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흥미, 행동, 정서 상태, 표현 방식의 개인차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 일과 운영과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 실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이후 보육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은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의 권리 존중,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지표	
1 - 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1 - 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 - 3	놀이 및 활동 지원
1 - 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1 - 5	보육과정 평가

영역 등급기준

- **우 수** 5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4개 이상 (필수 포함)
- **보 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선필요** 5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1-1 |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영유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영유아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최근 영유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유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관심, 요구, 흥미, 의도, 행동 등에 귀 기울이고 지지해줌으로써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놀이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보호와 존중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갖고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며 건강하게 성장 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영유아 권리 존중' 지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본 지표는 2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교사가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개별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지, 영유아의 다양한 배경 및 조건을 차별 없이 대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 Y □ N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보 통**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 **개선필요**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0개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②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함 ③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줌 ④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평정기준	4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언제든지 개별적 요구를 표현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
- 교사는 영유아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용, 인정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함.
- 교사는 영유아가 요구나 질문을 할 때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수용적 행동을 하며 영유아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깊게 들음.
-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즉시 언어적, 비언어적(몸짓, 표정 등)으로 적절하게 반응함.

  ※ 영아의 경우, 교사는 영아의 몸짓이나 음성화로 된 요구를 주의 깊게 보고 언어화하며 적절하게 반응함.

②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야기함.
  - 교사는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거나 모든 대화를 교사가 시도하고 교사 주도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교사는 영유아에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억양과 어조로 이야기함.
  - 교사는 영유아에게 말을 할 때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부드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톤으로 내용을 전달함.
- 교사는 영유아와 대화 시 눈을 맞춤.

③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줌

관찰

- 교사는 영유아의 말,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언급함으로써 교사가 영유아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교사는 영유아가 어려운 일을 시도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행동을 말로 표현해주며 격려함.
  - 자신감이 없는 영유아의 경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제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함.
    - 예 : '조금은 겁이 나지만, ○○이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손을 잡고 평균대 위를 걸어보자. 한 걸음만 먼저 해 볼까?' 등
- 교사는 미소를 지어주며 영유아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함.
- 교사는 영유아의 배경에 따른 말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 특이하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음.

④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관찰

-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영유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
  - 교사는 영유아에게 '선생님 말 안 들어서 또 잃어버렸잖아' 등과 같이 비난하는 말 대신 영유아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줌.
    - 예 : '○○야, 잃어버려서 속상하겠다. 선생님하고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바구니나 사물함에 넣어두면 잃어버리지 않을거야' 등
-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간결하고 명료하게 현재 상황과 영유아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함.
  - 교사는 영유아에게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선생님이 허락할 때까지 만지지 말고 보고만 있어' 등과 같이 영유아의 행동을 제지하는 명령, 지시, 통제 언어 대신에 영유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언어를 사용함.
    - 예 : '○○야, 조금만 뒤로 가주면 다른 친구가 잘 보일 것 같은데' 등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 ②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음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

관찰

-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지닌 배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함.
-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대함.
  - 교사는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 않으며, 성 차별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음.

②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음

관찰

-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여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음식을 천천히 먹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 시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

1-2 |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보육과정, 어린이집의 철학,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가 반영된 보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일 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보육할 것인지에 관한 연간보육계획안은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춰 월간,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 중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사전에 교사가 보육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영유아의 건강상태나 관심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보육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추구하는 목표, 철학 등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단, 이 때 하루 일과는 반드시 영유아의 발달수준, 흥미 및 요구를 반영한 놀이와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계획 해야 한다. 특히 실내 자유놀이와 바깥놀이는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여 계획하고 실시한다.

영유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은 발달에 적합한 놀이와 활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영유아의 하루 일과에서 이루어지는 등·하원, 낮잠, 급·간식 시간 등과 같은 일생생활과 관련된 활동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지표는 5개(장애영유아 6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하루 일과에서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운영하는지, 특별활동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1-2-1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 Y □ N
1-2-2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Y □ N
1-2-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Y □ N
1-2-4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 Y □ N
1-2-5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Y □ N
1-2-6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일반)

- **우 수**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5개
- **보 통**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4개
- **개선필요**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이하

지표 평정기준(장애영유아)

- **우 수** 6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6개
- **보 통** 6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5개
- **개선필요** 6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이하

1-2-1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평가내용	①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하여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함 ②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을 반별로 수립함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하여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함

기록

-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및 목표와 어린이집의 철학에 기초하여 연간보육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음.

면담

- **(원장)** 어린이집의 철학은 무엇이고, 연간보육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연간보육계획 수립 시 표준보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 **(교사)** 연간보육계획을 어떻게 작성하였는가? 어린이집의 철학이 연간보육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연간보육계획 수립 시 표준보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②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을 반별로 수립함

기록

-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이 반별로 수립되어 있음.
  - 혼합연령반의 경우, 그 반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음.
-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안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놀이, 사전경험, 지역적 특성, 계절 등에 기초하여 수립되어 있음.
- 일일보육계획안을 작성한 경우, 급·간식, 낮잠 및 휴식시간 등과 같은 일상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면담

- **(교사)**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안에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놀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구체적인 사례는?

1-2-2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평가내용	①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함 ②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③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함 ④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
평정기준	4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등원할 때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않고, 영유아에게 다가가거나 영유아를 바라보며 개별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미소로 반갑게 맞이함.
- 부모와 헤어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와 급하게 헤어지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영유아의 마음을 공감해 줌.
  - 교사는 등원하는 영유아에게만 집중하여 다른 영유아를 소홀히 하지 않음.
- 교사는 일부 영유아가 귀가를 시작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일과를 진행함.
  - 실내외 자유놀이 시간으로 일과를 진행하고, 귀가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관찰

-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연령, 식습관, 식사 속도, 식사량 등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 교사가 정한 규칙과 식사시간에 맞춰 영유아들이 음식을 먹도록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음.
- 교사는 바람직한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지도할 경우 칭찬,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함.

유아

- 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따라 교사가 도와줄 것인지, 스스로 먹도록 할 것인지 판단하여 지도함.

영아

- 영아의 경우 새로 접해보는 음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영아의 먹는 속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반응함.
- 교사는 영아 수유 시 영아를 안고 우유병을 잡아주며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함.
- 스스로 먹기가 가능한 영아일 경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병행함.
  - 일괄적으로 국에 밥을 말아 주지 않고 연령에 적합한 식사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③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함

관찰

유아

- 교사는 화장실 사용 시 유아의 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도움을 제공함.
- 교사는 유아가 배변 실수를 한 경우 혼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 청결습관 형성 및 올바른 화장실 사용방법을 유아의 속도에 맞추어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함.

만2세 영아

- 배변 훈련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배변 경험이 되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일관되게 지도함.
- 배변 실수의 경우 너그럽게 수용하여 차츰 영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함.

만0-1세 영아

- 기저귀 갈이 시, 영아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시도하고 다리 주무르기 등 영아의 신체를 자극하면서 배변 활동을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진행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함.

④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

관찰

- 만3세 이하의 종일반 영유아는 일과 중 반드시 낮잠시간을 계획, 실행함.
  - 만4세 이상 유아는 필요시 낮잠(또는 휴식) 시간을 운영함.
- 영유아가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함.
  - 창문의 커튼 등으로 보육실의 자연채광 조절하기, 조명을 어둡게 하기
  - 편안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그림책 읽어주기 등
- 낮잠 자기 전,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긴장감을 풀어주고 쾌적하게 잘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사는 영유아가 낮잠을 자는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안전한 낮잠 시간이 되도록 운영함.
- 개별적인 영유아의 낮잠 습관을 수용하고, 개인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함.
  - 오래 자거나 짧게 여러 번 자는 영아, 예민하여 작은 소리에도 깨는 영아, 애착물이 있어야 잠이 드는 영아 등 다양한 영아들의 습관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배려함.
- 잠이 깬 영유아를 안아 주는 등 기분 좋게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낮잠에서 일찍 깨어난 영유아는 한쪽에서 쉬거나 조용한 활동을 하도록 배려함.
- 낮잠 시간에 잠을 못 이루는 영유아에게는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함.

1-2-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가내용	① 매일 실내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6시간 이하 이용(맞춤반 영아) : 매일 1시간 이상 - 6시간 초과 이용(종일반 영아, 유아) : 매일 2시간 이상 ②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하여 교과목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매일 실내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관찰

-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이상 자유놀이 시간을 운영함.
  - 이 때,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맞춤반 영아로만 구성된 반(만0-1세, 만2세)은 매일 1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인정됨.
    ※ 자유놀이 시간에 대한 평정은 해당 반 영유아 현원의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 부터 시작함.
- 프로그램의 특성 상 바깥놀이 위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 자유놀이를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이상 운영함.

  ※ 이때 바깥놀이 시간은 별도로 산정함.
  ※ 바깥놀이에는 실외 자유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등이 포함됨.
  ※ 실외 자유놀이란 실외에서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놀이와 활동을 의미하며,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주도의 대집단 활동, 행사 등은 실외 자유놀이에 포함되지 않음.

기록

- 실내 자유놀이를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실시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내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내에서 매일 오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음.
- 프로그램의 특성 상 바깥놀이 위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 자유놀이를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실시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외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내에서 매일 오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음.

②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하여 교과목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관찰

- 하루 일과가 교과목(언어, 수,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등) 형태로 분절되지 않고, 실제로 자유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짐.

기록

-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자유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1-2-4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평가내용	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영아 만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 만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유아 매일 1시간 이상 장애아전문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평정기준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관찰

-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운영함.

  ※ 바깥놀이에는 실외 자유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물·모래놀이 등이 포함됨.
  ※ 만 0-1세 영아의 경우, 베란다 등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외부 공기를 쐬는 등의 활동을 진행 가능함.

기록

-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영아 : 만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 만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 유아 : 매일 1시간 이상
  ※ 장애아전문 :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날씨(한파, 폭염)와 기상현상(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바깥놀이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융통성 있게 실내 대체활동을 마련하여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내 대체활동은 대근육 활동으로 진행하되, 일부 자유놀이로 진행한 경우도 인정함.

- 영유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바깥놀이 시간을 짧게 운영하거나 실외에서도 정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의 상황(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1-2-5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평가내용	①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②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음 ③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됨
평정기준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Y로 평정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관찰

-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음.
  - 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태권도, 수영, 축구, 발레 등 기술연마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지식 습득 위주의 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활동이더라도 특별활동으로 평정함.

기록

-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동의서에는 필요한 정보(프로그램명, 영유아의 이름, 부모서명)가 누락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음.

②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음

관찰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놀이 등이 운영되고 있음.

기록

- 보육일지 등에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일과(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놀이 등)가 운영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③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됨

관찰

- 특별활동이 오후에 이루어짐.

기록

- 특별활동은 오후에만 운영되며,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1-2-6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평가내용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음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장애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와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하고 있음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음

기록

- 장애영유아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개별화보육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음.
  - 개별화보육계획안은 장애영유아의 현행수준, 장·단기 보육목표, 평가계획 및 부모동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별화보육목표가 포함된 보육과정을 운영하되,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실행된 내용이 반별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장애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와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하고 있음

기록

-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가 실제로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는 보육실 이외의 치료실 등에서도 제공할 수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내용이 치료일지 또는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

1-3 | 놀이 및 활동지원

모든 놀이와 활동은 영유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때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유아의 자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의 주체가 영유아임을 인식하고,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놀이와 활동을 이끌어 나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소외되는 영유아 없이 모든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적절한 놀이와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이 주도성, 자발성, 즐거움의 특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므로, 교사는 자유놀이 시간을 교사 주도의 주입식 활동으로 이끌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 발달한다는 신념을 갖고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 상황을 관찰하면서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이 유지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놀이행동 묘사, 개방적 질문 등과 같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놀잇감과 활동자료들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을 지원 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하는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1-3-1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 Y □ N
1-3-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	□ Y □ N
1-3-3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1-3-1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여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영아 :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②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함 ③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여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관찰

-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놀이와 활동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놀이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교사는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시도하는 놀이를 지켜보며, 이를 인정하고 격려함.
- 교사는 준비된 활동이나 놀이를 안내할 수 있지만, 영유아에게 특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않음.
- 영유아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놀이와 활동에 몰입하고 있음.

유아

- 대집단 활동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실시함.
- 교사는 유아의 놀이과정을 언어로 표현하여 유아의 놀이 선택과 시도를 인정하고 격려함.
  - 예 : '동물원에 호랑이들이 살고 있구나', '(점토놀이) 호랑이가 서있게 하려고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구나' 등

영아

-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 교사는 영아가 선택한 놀이나 놀이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영아가 교사에게 수용, 인정받는 느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놀이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함.
  - 긍정적 신호 예 : 미소, 끄덕임, 부드러운 시선 주기, '○○를 해 보고 싶구나' '~를 ○○해보니 재미있구나' 등의 언어적 표현하기

②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나 활동을 할 때 영유아의 호기심과 내적 동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 등을 하여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함.
  - 교사는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지속하려는 태도를 격려함.
    - 예 : '○○이는 무엇으로 좋아하는 동물을 꾸미고 싶니?', '○○이는 물이 흐르게 하고 싶구나. 물이 흐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등
-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이끌어가지 않음. 놀이의 시작, 진행, 마무리에 대한 결정의 주도권이 영유아에게 있음.
  - 역할놀이에서 놀이의 역할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영유아가 하고 싶은 역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영역에서 교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만 색칠하기, 만들기, 꾸미기 등을 하지 않음.

유아

-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사물, 사람에 대해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놀이와 활동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교사가 일방적인 설명이나 통제, 지시로 일관하여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유발을 방해하지 않음.

영유아 놀이와 활동을 격려하는 상호작용의 예

- 예 : 유아가 모래놀이터에서 물웅덩이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물이 자꾸 없어진다며 화를 내는 경우

유아 주도	'○○이가 물웅덩이를 만들고 싶구나. 물이 왜 없어질까?',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 '물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재료가 있을까?'
교사 주도	'○○아, 물을 모래에 부으면 물이 모래에 흡수되어 없어지는 게 당연해. 자~ 선생님처럼 모래 위에 비닐을 깔고 물을 부어볼까?'

영아

- 교사는 영아 스스로가 자신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하며, 적절하게 반응하고 격려함.
  - 예 : 아기를 재우는 흉내를 내는 영아에게 '○○이가 종이벽돌로 아기 침대를 만들어주었구나. 아기가 편하게 잘 수 있겠다.' 등

③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참여를 살펴보고 영유아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경우 놀이를 안내하는 등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함.
  - 예 : '○○아, 밀가루 반죽이 아주 부드러운데 한번 만져볼까?'
    (손 인형을 이용하여) '○○아, 오늘 원숭이가 그려진 옷을 입고 왔구나, 우리반에 원숭이 인형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등

※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어서 놀이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억지로 놀이를 권하지 않음.

유아

-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 여부를 질문함.
- 유아가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권유함.
  - 예 :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기름은 어디에서 넣어요?' 라고 묻고, 놀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아에게 '친구들이 주유소를 찾고 있대. ○○이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줄 수 있겠니?' 라고 권유함.
- 교사는 놀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아를 일방적으로 놀이에 참여시키지 않음.

영아

- 영아가 흥미를 가질 만한 놀잇감이나 활동자료를 탐색해볼 수 있도록 권유함.
  - 예 : '(촉감놀이판) 이거 만져보니까 부드럽네, ○○도 만져보고 싶니?' 등
- 교사가 영아가 할 수 있는 놀이의 모델링을 하여 영아가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함.
-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아가 또래들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래들의 놀이행동을 말로 표현해 줌.

1-3-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함 ②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함 ③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함

관찰

- 교사는 항상 영유아가 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보육실 전체나 바깥놀이 공간 전체를 자주 살펴 반 전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수시로 확인함.
  - 교사는 전체 영유아가 어떤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어려워하는 점은 없는지, 또래와의 관계는 즐거운지, 놀이나 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함.

②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놀이 개입이 필요한 경우 놀이상대의 역할을 하거나 놀잇감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놀이를 지속시킴.
  - 과도한 교사의 개입은 비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함.
-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에 적절한 놀이개입을 함.
  - 영유아가 교사를 놀이에 초대할 때
  - 놀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때
  - 놀이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학습을 위한 결정적 순간일 때
-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개방적 질문을 함.

- 교사는 영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키거나 영유아가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발문을 함.
  - 영아의 예
    - (놀이집에서 놀이하는 영아에게) 교사가 놀이집의 문을 두드리며 '똑똑똑! 집에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나요?' 하면서 영아의 반응을 유도하며 눈을 맞춤. 영아가 들어오라고 손짓이나 몸짓, 발성, 말소리 등으로 표현하면 '여기 놀이집에 ○○이가 있구나! 또 누가 있나요?' 라고 반응해 줌.
    - '이것의 뚜껑은 어디에 있지? 잘 맞춰지지 않네.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등
  - 유아의 예
    - '동화책 속의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했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네!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등
-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놀이와 활동을 지원함.

③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

관찰

-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영유아와 함께 놀이함.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아닌 영유아의 놀이상대가 되어 즐겁게 놀이함.

1-3-3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 ②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③ 놀잇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

관찰

-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
- 영유아의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
  - 영유아가 지난주에 했던 놀이와 활동 중 흥미가 지속되는 놀이 및 활동자료
  - 영유아의 최근 경험과 관련된 놀이 및 활동자료(명절, 계절, 특별한 사건 등)
- 놀이와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영유아 수를 고려하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함.
-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
  - 자유놀이 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놀잇감을 충분히 마련함.
    - 예 : 종이벽돌, 소품으로 사용할 인형, 자동차, 소꿉 놀잇감, 그림책, 색연필 등

②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관찰

- 계획안의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보육실 또는 옥외놀이터에 구비함.
- 계획안에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흥미나 요구에 의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함.

면담

- **(교사)** 계획안에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요즘 영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놀이 및 활동은 무엇인가? 놀이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놀잇감(자료)을 제공하였는가?

③ 놀잇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관찰

- 영유아가 자유놀이나 활동을 할 때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개방된 교구장 또는 바구니 등에 보관함.
-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영유아가 찾기 쉽도록 정리하여 배치함.

1-4 |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영유아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터득하며 사회적 유능성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 간에 의견 등을 나누며 또래 간 학습이 이루어진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경험한 또래 관계의 질은 이후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유아가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영유아는 자기중심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 자주 부딪히게 된다. 영유아는 발달특성 상 타인조망이 어려우므로, 교사는 영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문제해결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 공감 등의 방법을 통해 영유아 간 상호작용을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또래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개입하는 것 뿐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서로 나누며, 돕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한다. 이 때 또래와의 긍정적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도 모델링을 보이는 것이 좋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교사가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지,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누고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하는지,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지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1-4-1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 Y □ N
1-4-2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 Y □ N
1-4-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 Y □ N
1-4-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방식을 사용한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4개
- **보 통**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3개
-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1-4-1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평가내용	①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반응함 ②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기분을 파악하여 언어적, 비언적으로 반응하며 수용함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반응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음.
- 교사는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우선 따뜻한 말로 현재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원함.
  - 예 : '울면 안돼', '화내지 않아요' 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속상해서 우는구나', '화가 났구나' 등으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는 반응을 함.

②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기분을 파악하여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하며 수용함

관찰

- 교사는 일상에서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기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함.
- 교사는 영유아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해 줌.
- 교사는 영유아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언어적, 비언어적(미소, 고개 끄덕이기, 토닥거림, 안아주기, 손 잡아주기 등)으로 반응함.

1-4-2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②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함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함.
-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영유아 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도록 격려함.
- 영유아가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경우 교사는 영유아에게 언어적 모델을 보임.

영아

- 영아의 경우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교사는 영아의 눈빛, 몸짓 등을 잘 관찰한 후 영아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영아 대신 말로 표현해 줌.
- 교사가 다른 영아를 바라보거나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으로라도 또래에게 말을 걸어 표현하는 모습을 영아에게 보여줌.
  - 예 : '○○가 △△를 보고 웃고 있네. 서로 안녕하고 인사해볼까?', '○○야, 안녕? 손을 흔들어 보자. 안녕?' 등

②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함.
- 교사는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언어나 행동, 표정, 놀이 진행과정 등을 관찰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함.

유아

-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또래 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니?' 등과 같이 또래 간에 놀이와 활동이 공유되도록 격려함.
- 교사는 놀이나 활동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 개방적 질문 등을 통하여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격려함.
- 또래 간 상호작용 시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낼 경우,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또래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함.

영아

- 교사가 영아의 놀이행동이나 말을 묘사하여 영아가 또래에게 관심을 갖도록 지원함.
- 만0-1세 영아의 경우,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의 표현(웃기, 손짓하기 등)을 알아차리고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함.
- 만2세 영아의 경우, 일상에서 또래 간에 관심을 갖거나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격려함.

1-4-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평가내용	① 반별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있음 ② 교사는 영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가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격려함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반별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있음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영유아와 함께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함.
- 반별 약속과 규칙은 해당 연령의 영유아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내용임.

면담

- **(교사)** ○○반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과 규칙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하였는가? ○○반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과 규칙은 무엇인가?

② 교사는 영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가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격려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에게 약속과 규칙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지시하지 않음.
-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약속과 규칙이 교사의 마음대로 바뀌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음.
-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규칙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영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지킬 경우 격려함.

1-4-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방식을 사용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놀잇감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 ②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령에 적합하게 개입함 ③ 영유아가 다양한 긍정적 해결방안을 사용하도록 격려함(요청, 교환, 함께 쓰기, 번갈아하기)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놀잇감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

관찰

- 교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영유아가 사용할 놀잇감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다툼을 예방함.
  - 영유아의 연령,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유아 수, 놀잇감의 선호 정도 등을 고려함.
    ※ 영아의 경우 좋아하는 놀잇감을 영아 수만큼 모양, 색, 크기가 똑같은 것으로 구비함.
- 교사는 영유아 수에 따라 놀이공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함.
  - 한 영역에 영유아가 집중될 경우 교구장이나 책상(의자) 등의 위치를 옮겨 영유아가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함.

②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령에 적합하게 개입함

관찰

-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결론을 바로 내리거나 일방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상황을 상세히 살펴 적절히 개입함.

유아

- 교사는 유아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함.
- 다툼이 발생한 경우 유아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상황을 파악함.
- 유아가 서로 공평하다고 느끼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함.

- 유아가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표현해보도록 하며, 교사도 신중히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임.
  - 예 : '○○이가 만약 △△라면 △△는 어떤 느낌일까?' 등
- 유아 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였을 경우, 교사는 이를 칭찬해주고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함.
- 교사가 다툼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교사 주도로 다툼을 종결시키고 일방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예 : 다투었던 두 유아를 벌세우기, '누가 이 놀잇감을 먼저 갖고 놀았니? 그럼 ○○가 잠시 더 갖고 놀다가 △△에게 양보하자' 등 교사가 직접 해결방안 제시하기 등

영아

- 교사는 문제 상황에 적절히 개입하여 영아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영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아의 행동에 대해 설명함.
- 영아들은 언어적 표현이 서툴러 신체적 공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개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 교사가 영아 간의 문제에 개입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양쪽 영아의 감정을 수용하고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이유를 설명하며 긍정적 행동을 모델링함.
  - 예 : '○○이가 △△의 놀잇감을 가져가서 화가 났구나. 다음번에는 △△야, 이거 가져가도 돼? 라고 물어볼 수 있겠니? 그러면 △△이도 화가 나지 않고 같이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등

③ 영유아가 다양한 긍정적 해결방안을 사용하도록 격려함(요청, 교환, 함께 쓰기, 번갈아하기)

관찰

- 영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함.
  - 요청하기 : '내가 그거 가지고 놀아도 되니?' 등
  - 교환하기 : '내가 너한테 긴 블록 줄게. 세모 블록 나한테 줄래?' 등
  - 함께 쓰기 : '우리 함께 가지고 놀자' 등
  - 번갈아하기 : '네가 다 놀고 나한테 줘~' 등
- 한 가지 방법이 또래에게 통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영유아가 다양한 해결방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가 모델링함.

1-5 | 보육과정 평가

영유아와 보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기적인 평가는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교사의 놀이지원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부모 면담 등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보육과정의 운영은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단계의 내용이 다른 단계의 내용에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적합한 보육과정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보육과정 평가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놀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영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자료는 적절히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매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 변화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유아를 이해하고 지원방법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총 책임자로 각 반별로 보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하루 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한 반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하는지, 개별 영유아를 관찰하고 평가하는지,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1-5-1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내용을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한다.	□ Y □ N
1-5-2	개별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 Y □ N
1-5-3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1-5-1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내용을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한다.**
평가내용	①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평가기록이 있음 ② 보육일지에 평가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평가기록이 있음

기록

- 영유아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 어떻게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육일지에 반별로 기록되어 있음.
  - 영유아의 하루 일과가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음.
  - 개별 영유아 또는 또래 집단의 놀이와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
  - 교사가 계획한 활동, 계획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놀이와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
  - 놀이와 활동을 실행한 후, 이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음.

② 보육일지에 평가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기록

- 필요한 경우 보육일지에 기록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이후 놀이지원 계획 또는 보육계획을 수립한 기록이 있음.
  - 예 : 4월 7일(화) 보육일지에 '유아들이 쌓기 영역에서 봄 동산 만들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꽃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함. 미술영역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감의 종이에 대한 관심을 보임' 이라는 평가를 했고, 4월 8일(수) 보육일지에 자유놀이 시간에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제공하고 꽃을 만들어 놀이한 기록이 있음.

1-5-2	**개별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②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함 ③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지원, 부모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음 ④ 장애영유아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음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장애영유아 4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기록

- 영유아별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모두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가 있음.
  - 영유아 관찰 내용은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음.
-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짐.

②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함

기록

- 영유아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별로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한 내용이 있음.
  -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에 대해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하여 평가함.
    ※ 어린이집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평정함.

③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지원, 부모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음

- 영유아 평가결과를 영유아 놀이지원, 활동 선정, 환경구성, 상호작용 방법, 부모면담 중 하나 이상에 반영한 적이 있음.

면담

- **(교사)**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 놀이지원, 활동 선정, 환경구성, 상호작용 방법 등에 반영한 적이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는?
- **(교사)** 영유아 평가 결과를 부모면담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가? 반영한 사례는?

④ 장애영유아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음**

관찰

- 개별 장애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 이때, 진단·평가 도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

면담

- **(교사)** 개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를 마련하고 있는가?
- **(교사)**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1-5-3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 ②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함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

- 보육과정은 보육철학, 보육계획(내용), 보육실행(교수·학습방법), 보육평가로 구성됨.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반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보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이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이어야 함.
-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담임교사와의 면담, 보육실 관찰 및 지도 등을 통해 반별로 보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함.
- 원장의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설정한 철학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린이집의 철학과 표준보육과정, 영유아의 발달수준 및 요구에 따라 보육계획이 수립, 실행되고 있는지, 각 반별 보육과정 평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육과정 운영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면담

- **(원장)**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반별 보육과정 운영 평가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가(계획안, 환경구성, 상호작용 등)?
- **(원장)**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②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함

면담

- **(원장)** 반별 보육과정 평가를 어린이집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실제 반영된 사례는 무엇인가?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유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 실내외 놀이공간, 시설 및 설비를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 흥미와 요구에 적합하게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어린이집 환경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각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보육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육실 뿐 아니라 그 이외의 공간도 필요하며, 이러한 공간은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한편, 같은 조건의 물리적 환경이라도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놀이나 활동, 일상생활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즉,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갖추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영유아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영역에서는 어린이집의 실내외 환경 구성과 바깥놀이 운영에 대해 평가한다.

어린이집 운영관리는 어린이집 운영방침 수립,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은 운영계획 수립, 원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해진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은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기관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지표	
2 - 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2 - 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2 - 3	기관 운영
2 - 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영역 등급기준

- **우 수** 4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3개 이상
- **보 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선필요** 4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2-1 |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은 영유아가 자신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놀이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놀고자 하는 요구와 쉬고자 하는 요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영유아의 놀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육실을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보육실은 다수의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가지 놀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영유아가 놀이와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놀이 및 활동자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보육프로그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올바른 흥미영역이나 놀이영역의 사례가 있을 수 없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보육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보육실 환경을 어린이집의 특색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영유아별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보육실 이외에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보육실 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이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비품과 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2-1-1	보육실 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하여 구성한다.	□ Y □ N
2-1-2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다.	□ Y □ N
2-1-3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 Y □ N
2-1-4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4개
- **보 통**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3개
-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2-1-1	**보육실 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하여 구성한다.**
평가내용	①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반영한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②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반영한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관찰

- 보육실 공간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 구성 여부는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다름.
- 흥미영역 및 놀이영역의 수는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육실의 공간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성격의 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흥미영역이란,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보육실 공간을 나누고 각 놀이 특성에 따라 자료들을 모아서 영역별로 배치하는 것을 말함.
-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음.
  - 연령별 흥미영역 구성의 예
    - 만0세 : 신체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 만1세 : 신체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역할 및 쌓기놀이 영역
    - 만2세 : 신체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미술영역, 음률영역, 역할 및 쌓기놀이 영역
    - 만3-5세 : 언어영역, 미술영역, 음률영역, 수·조작영역, 과학영역, 역할놀이 영역, 쌓기놀이 영역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어린이집 전체 공간에 흥미영역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흥미영역은 영유아들이 일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놀이영역은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구성된 놀이공간임.
  - 몬테소리, 레지오 에밀리아, 발도로프 프로그램, 프로젝트 접근법 등 해당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는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바깥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실은 하나의 놀이영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②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관찰

-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해당 공간에서 놀이하는 영유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놀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 보육실 내 활동자료장과 책상, 의자 등은 영유아의 수나 보육실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구비되어 있음.
  - 보육실에 활동자료장과 책상, 의자 등을 지나치게 많이 비치하여 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활동자료장이나 책상 배치 시 영유아의 이동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 특정한 영역에 영유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영유아가 편안하게 놀이하도록 교구장이나 책상, 의자 등을 재배치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함.

2-1-2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다.
평가내용	①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 영유아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함 ② 영아 기저귀 갈이대, 수유공간 등 영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갈이 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③ 장애아전문 실내 시설 및 설비는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도구가 마련되어 있음
평정기준	영아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영아가 없는 경우) 1개(①) 충족하면 Y로 평정 장애아전문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영아가 없는 경우) 2개(①, ③) 충족하면 Y로 평정

①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 영유아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함

관찰

- 영유아용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은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하고, 영유아 스스로 사용 가능함.
- 실내외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설비 및 가구 등은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함.
-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고,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임.

※ 어린이집 화장실에는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영유아가 성인용 변기 및 세면대 사용 시 반드시 안전발판, 보조변기 등을 활용하도록 함.

② 영아 기저귀 갈이대, 수유공간 등 영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갈이 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관찰

- 기저귀 갈이대, 수유공간 등 영아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해당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갈이 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 기저귀 갈이, 수유를 하는 영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평정함.

③ 장애아전문 **실내 시설 및 설비는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도구가 마련되어 있음**

관찰

-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한 실내외 시설 및 설비, 보조도구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영유아를 위하여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점자 유도 블록, 핸드 레일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
  - 화장실에는 대·소변기의 높이가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며, 휠체어 사용이 가능할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피더시트, 기립보조 책상, 자세교정 의자, 앉아있는 채로 이동이 용이한 의자 등 장애유형에 맞는 기구들과 설비들이 마련되어 있음.

2-1-3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공간, 양호공간, 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음 ②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음 ③ 영유아의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공간, 양호공간, 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음

관찰

- 보육실 외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별도의 공간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으며, 다음의 설비 및 비품들이 비치되어 있음.
  -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희실이 마련되어 있고,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놀잇감 등이 비치되어 있음.
  - 영유아가 그림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책꽂이와 의자(소파) 등이 비치된 도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양호공간이 어린이집 내(원장실 등)에 마련되어 있고, 비상약품, 간이침대(매트) 등이 비치되어 있음.
  - 시청각실 등 기타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은 인정함(예 : 원장실을 양호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에서 거실을 유희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

②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음

관찰

- 영유아들이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놀이하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보육실마다 마련되어 있음.
- 휴식공간은 놀이공간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음.
  - 휴식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언어영역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휴식공간은 보육실의 조용한 곳에 배치되어 있음.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어린이집 전체 공간 중 한 곳에 휴식공간을 배치할 수 있으며, 휴식공간은 영유아들이 일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영유아의 접근이 어렵거나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휴식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③ 영유아의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관찰

- 영유아의 개인 소지품이나 영유아가 만든 작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공간(사물함)이 영유아의 수에 맞게 마련되어 있음.

  - 개별 사물함에는 영유아가 자신의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이나 사진을 부착함.

- 개별 사물함은 영유아가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꺼내거나 보관해 둘 수 있도록 영유아의 키 높이에 맞아야 하며, 보육실 내 또는 보육실 인근에 마련되어 있음.

  - 개별 사물함은 잠금장치 등이 없어 영유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음.

2-1-4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
평정기준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

관찰

- 각 보육실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장소(창고나 자료실, 베란다 등)에 보관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 창고나 자료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곳(교사실이나 원장실, 상담실 등)에 따로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함.
- 별도의 장소가 없어서 복도나 유희실 등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상단에 자료장을 만들어 보관하여 영유아의 이동이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은 별도의 장소가 없어도 실내에 자료장을 마련하여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인정함.
- 비품과 활동자료를 연령, 주제 또는 영역 등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내용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

2-2 |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영유아들에게 바깥놀이는 새로운 신체적 도전, 힘과 체력 발달, 대근육과 소근육 사용법, 다양한 실외환경 탐색 및 실험, 또래와 상호작용하기, 자연을 감상하고 탐색하기 등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처럼 바깥놀이를 통해 영유아는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실외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질적으로 우수한 실외환경은 영유아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놀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 실외환경에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영유아에게 더 의미있는 실외환경은 영유아의 자발적인 요구와 흥미에 따른 다양한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즉, 놀이기구가 많이 있더라도 영유아의 다양한 움직임과 놀이를 지원해주지 못하면 무의미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흙으로 만들어진 언덕에서 썰매를 타고 오르내리는 활동과 같이 화려한 놀이기구나 활동자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놀이를 지원하는 실외환경이라면 영유아에게 더 의미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특성상 바깥놀이에서 자연을 접하는 경험은 매우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실외환경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어린이집에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 하고 있는지, 바깥놀이에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2-2-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 Y □ N
2-2-2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 Y □ N
2-2-3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2-2-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음 ②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평정기준	2개 중 1개를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음

관찰

- 옥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 놀이터에는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 설치가 원칙이나, 옥외놀이터 설치가 불가하여 대체놀이터로 인가받은 경우 대체놀이터 이용이 가능함.

②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관찰

-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인근놀이터의 사용승낙서 구비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인근에 놀이터가 전혀 없거나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유희실(대근육 활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실내놀이터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정함.

대체놀이터 종류 * 출처 :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 옥내놀이터 :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 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초등학교 놀이터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않으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체(인근)놀이터로 인정하지 않음.

2-2-2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평가내용	①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②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크기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 ③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관찰

-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에는 영유아의 발달수준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 놀이기구 : 미끄럼틀, 흔들말, 그네, 놀이집 등
  - 놀이 및 활동자료 : 모래놀이용 미니삽, 물뿌리개, 자전거, 물놀이 자료, 바람개비, 비눗방울, 훌라후프 등
-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는 영유아들이 바깥놀이에 몰입하여 즐길 만큼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즉, 바깥놀이에서 놀이를 찾지 못해 배회하는 영유아가 없고, 하나의 놀잇감을 가지고 영유아 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음.

② 놀이기구 또는 놀이,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크기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

관찰

-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

③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관찰

- 영유아가 햇빛, 바람, 나무, 꽃, 흙, 모래, 물 등과 같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실외환경이 작은 면적이라도 마련되어 있음.

  - 모래놀이터, 물놀이 공간, 동물 관찰 영역, 자연체험 영역(텃밭, 화단) 등

면담

- **(교사)** 영유아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실외환경으로 무엇을 마련하였는가?

2-2-3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
평가내용	① 바깥놀이 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짐 ② 바깥놀이 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짐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바깥놀이 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짐

관찰

- 영유아는 자신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바깥놀이를 주도하고 지속함.
  - 땅에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기, 흙 위에 물로 그림 그리기 등과 같은 특별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부터 미끄럼틀 타고 오르내리기, 그네 타기 등 놀이기구를 활용한 놀이까지 영유아 스스로 즐겁게 하는 놀이와 활동이 모두 포함됨.
- 교사는 바깥놀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 교사가 놀이나 활동을 제안할 수 있지만, 특정 놀이나 활동을 강요하지 않음.

면담

- **(교사)** 바깥놀이에서는 주로 어떤 놀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② 바깥놀이 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짐

관찰

- 영유아가 햇빛, 바람, 나무, 꽃, 흙, 모래, 물 등과 같은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활동을 함.
  - 바깥에서 바람 느껴보기, 꽃잎 관찰하기, 흙 밟아보기, 구름 관찰하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포함됨.
- 교사는 영유아가 자연물을 만지고, 냄새 맡고 보고 듣는 경험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함.

면담

- **(교사)** 바깥놀이에서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활동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2-3 | 기관 운영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과 집단의 크기는 공간의 크기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 구조적 특성이다. 어린이집의 총 정원 내에서 모든 반의 구성이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과 집단 크기 측면에서 적합하게 유지되면, 교사는 영유아와 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보다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별적인 흥미나 요구에 원활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는 자신의 연령 특성에 맞게 구성된 반 내에서 교사 및 또래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집 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함으로써 부모의 보육요구에 보다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고, 영유아가 안정적인 돌봄을 통해 건전한 발달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총 정원 내에서 지역사회 및 가정의 요구, 어린이집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 운영한다. 이때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반별 집단 크기 등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교사가 모든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신규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신입 영유아의 적응을 지원해줌으로써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는지,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부모에게 안내하는지,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지, 신입 영유아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2-3-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 Y □ N
2-3-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	□ Y □ N
2-3-3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 Y □ N
2-3-4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4개
- **보 통**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3개
-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2-3-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②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음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관찰, **기록**

- 모든 반에서 연령별 교사 대 영유아 법정 비율을 지키고 있음.
-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경우,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하고 있음.

※ 반별 정원 탄력편성 가능인원, 농어촌 특례 인정범위는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준함(농어촌 특례가 인정된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은 불가능함).

※ 반 구성 및 영유아 재원사항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장애영유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3	1:5	1:7	1:15	1:20	1:3

혼합반 편성(2019 보육사업안내)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3	1:5	-	-	1:15

※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함.

②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음

관찰, **기록**

- 여러 반의 영유아가 한 보육실에서 보육되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의 수는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영유아의 수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함.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기준	3배	2배	2배	2배	2배
인원수	9명	10명	14명	30명	40명

※ 장애아전문의 경우,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는 장애영유아의 수가 최대 9명을 초과하지 않음.

2-3-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
평가내용	①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②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됨 ③ 17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자유놀이 등이 운영되고 있음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기록

- 어린이집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 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함.
  - 수요조사서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19:30)과 부모가 작성한 희망 등·하원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등·하원 시간이 기재된 귀가동의서, 입학원서 등은 수요조사서로 인정되지 않음.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함.
  - 부모가 등·하원시간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 원아가 있는 경우 해당 원아에 대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

②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됨

기록

-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부모에게 안내함.
- 운영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시간대별 교사 배치,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사용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③ 17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자유놀이 등이 운영되고 있음

기록

- 17시 이후 보육되는 종일반 영유아를 위한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자유놀이 등이 이루어짐.

2-3-3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평정기준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기록

-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마련되어 있음.
- 신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운영일지 등)이 있음.
  - 대상 : 신입교사, 대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운전자 등), 보육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2-3-4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음 ② 신입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음

기록

- 신입 영유아 적응 절차(실시기간,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마련되어 있음.
- 신입 영유아의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음.
  - 대상 : 신입 영유아(학기 초, 중간입소 모두 포함)
  - 기간 : 최소한 5일 이상(토·일 제외)
  - 방법 : 단계적으로 단축보육을 실시하는 등 개별 영유아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

면담

- **(공통)** 신입 영유아 적응 과정을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가?
- **(공통)** 신입 영유아의 적응을 위해 어떤 점을 배려하는가?

② 신입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기록

- 신입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어린이집의 보육철학, 운영안내 등)가 마련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대상 : 학기 초 신입원아 부모, 중간입소 원아 부모
  - 방법 : 집단 또는 개별 오리엔테이션 실시

면담

- **(공통)** 신입 영유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2-4 |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모와 어린이집 간에 영유아와 관련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들의 활동과 참여를 보다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부모는 어린이집의 경험을 가정과 연계하여 영유아가 가정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할 때 영유아는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특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관된 양육 및 교육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영유아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다양한 부모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가정과의 의사소통과 개별면담이 이루어지는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2-4-1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다양한 부모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 Y □ N
2-4-2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	□ Y □ N
2-4-3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2-4-1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다양한 부모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평가내용	① 부모가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② 부모가 자원봉사, 현장학습 동반, 급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참여하고 있음 ③ 부모교육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부모가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기록

- 부모에게 보육실 참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자료(운영계획 등)가 있음.

면담

- **(원장)** 보육실 참관을 원하는 부모를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원장)** 마련된 절차와 방법을 부모에게 어떻게 안내하는가?
- **(교사)** 부모의 보육실 참관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부모가 자원봉사, 현장학습 동반, 급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참여하고 있음

면담

- **(원장)** 최근 1년 이내에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였는가?

③ 부모교육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 부모교육은 대면교육(집단모임)과 비대면교육(지면, 온라인매체 등)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록

- 부모교육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 지면(가정통신문, 양육정보지, 양육안내 편지, 리플릿, 소책자 등)
  -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 집단모임(소모임, 부모 강연회, 워크숍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2-4-2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
평가내용	① 평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음 ②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내용을 기록, 관리함 ③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평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음

기록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이 두 가지 이상임.
  - 지면(가정통신문, 알림장, 소책자, 게시판 등)
  - 전화 및 온라인 매체(문자메시지, SNS, 스마트알림장,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 수시면담(영유아의 특성이나 가정의 배경을 고려한 비정기적인 의사소통 등)
  - 집단모임(소모임, 행사 등)
  - 부모만족도조사(어린이집의 서비스 전반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②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내용을 기록, 관리함

기록

-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학기 당 1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
  - 개별면담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

    ※ 부모 개별면담 진행 당시 재원 영유아를 기준으로 평정함.

    ※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③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영유아의 적응 문제나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영유아 관찰, 개별면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음.
-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면담

- **(공통)** 현재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 **(공통)** 영유아나 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공통)** 영유아나 가족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정보를 알고 있는가?

2-4-3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평정기준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기록

-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활동이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기록되어 있음.
  - 지역사회에 있는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 지역의 자원(도서관, 우체국, 초등학교, 노인센터, 마트, 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안전·건강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 등
  -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예절 교육, 동화책 읽어주기 등을 지원
  - 인근 노인정·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미니 공연
  - 유아들이 만든 활동 결과물을 이용하여 거리에서 아동안전에 대한 미니 캠페인 실시 등

3 건강·안전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요건이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은 일차적으로 신체적 상해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방임, 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와 가족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영유아의 건강·안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그 책임 역시 막중해졌다.

영유아의 건강·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육교직원은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가져야 하며, 질병의 예방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풍부한 식재료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청결하게 조리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항상 주의 깊게 보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길러 어린이집의 일과에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건강·안전' 영역은 총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급·간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등·하원의 안전,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등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지표	
3 - 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 2	급·간식
3 - 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 4	등·하원의 안전
3 - 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영역 등급기준

- **우 수** 5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4개 이상 (필수 포함)
- **보 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선필요** 5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3-1 |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질병 등에 취약하므로 보건위생 측면에서의 청결과 안전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의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여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조성되는 것은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청결한 어린이집 환경은 영유아의 질병 감염을 막아주고 신체 건강을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영유아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지냄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안전한 환경은 영유아로 하여금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의 욕구와 호기심에 따라 마음껏 탐색하고 궁금한 문제를 탐구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준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외 공간을 늘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영유아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놀잇감과 실내외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구비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즉시 수리·보완하여 영유아가 안전사고의 위험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어린이집의 실내외 공간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되는지, 실내외 공간과 설비가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실내외 놀잇감과 위험한 물건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 Y □ N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 Y □ N
3-1-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평가내용	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 ②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함 ③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함 ④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

관찰

- 보육실 및 실내 공간(현관과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이 찌든 때, 먼지, 해충 등이 없이 청결함.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 비치된 설비와 비품(가구, 가전제품, 매트, 청소도구와 보관함, 휴지통 등)이 청결하게 유지함.
- 실외 공간(옥외놀이터, 옥상놀이터, 화단, 어린이집 출입구 등)이 청결함.
- 실외 고정식 놀이기구는 녹이 슬지 않고 청결함.
-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 변기, 휴지통 등이 청결하며, 수건은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됨.

영아

- 기저귀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기저귀 갈이대, 화장실)에서 갈아줌.
- 기저귀 가는 공간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할 때 마다 소독함.
  - 개별 영아의 기저귀 갈이가 이루어지기 전, 후에 기저귀 갈이대를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 기저귀 갈이대 위에 별도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저귀를 갈 때마다 깔개를 교체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 기저귀 갈이대는 일과 중 영유아가 밟고 다니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함.
  - 사용한 기저귀나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워서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함.
- 이동식 변기는 사용 후 빠른 시간 내(1시간 이내) 처리하고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②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함

관찰

- 보육실 및 실내외 공간의 놀이기구,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이 청결함.
- 놀잇감이 찌든 때, 먼지 없이 청결함.

영아

-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고 매일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면담

- **(교사)** 영아들이 사용하는 놀잇감은 얼마나 자주 세척하는가?

③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함

관찰

- 모든 영유아는 개별 침구(개별 이불, 개별 요, 개별 베개)를 사용함.
  - 동일한 모양과 색깔일 경우에는 개별 구분의 표시가 있음.
  - 여분의 침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탁한 후 다른 영유아가 사용하도록 관리함.
  - 놀이매트 등은 침구로 사용하지 않음.
- 모든 개별 침구와 여분의 침구가 청결함.
- 침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청결함.

면담

- **(교사)** 사용한 여분의 침구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④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관찰

- 어린이집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의 창문을 자주 열고 환기를 시킴.
  - 특히 화장실의 경우, 환기를 자주 하여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함.

-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여 작동하고 있으며, 필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함.
  -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함.
- 보육실 및 실내 공간(복도, 유희실, 실내놀이터 등)은 계절이나 날씨를 고려하여 실내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음.
  - 필요시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은 자연채광이 충분하며,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제대로 작동함.
  - 창문에 과도하게 썬팅지(한지)를 부착하거나, 하루 종일 커튼(블라인드)을 치는 등 햇빛을 가리지 않음.
  - 가구, 가전제품, 적재물 등으로 햇빛을 가리지 않음.
    ※ 창문의 2/3 이상이 불투명 썬팅지, 가구, 적재물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자연채광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함.
  - 전등의 수가 부족하거나 조명의 조도가 낮아 활동에 방해가 되는 공간이 없음.

기록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이 있음.
  -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가 '양호'에 해당함.
    ※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인 경우, 관찰 결과로 평정함.

면담

- **(원장)**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관리(필터 교체 주기, 방법 등)하는가?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평가내용	①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②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③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④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관찰

- 현관문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음.
- 출입문(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있음.
- 출입문 문턱은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마감되어 있음.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창문(2층 이상)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천장, 바닥, 벽면 등에 균열, 돌출 등 위험요인이 없음.
- 계단이나 화장실, 세면장 등의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②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관찰

- 보육실 및 실내공간의 고정식 시설·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선반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음.
  -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온열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돌출형 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계절에 관계 없이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화기시설, 가스밸브 등에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음.
- 블라인드 줄, 샤워기 줄 등은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음.
- 덤웨이터(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유희실이나 실내놀이터의 고정식 놀이기구(고정식 미끄럼틀, 볼풀장 등)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음.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이동식 시설·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의 가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은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실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함.

- 옥외놀이터의 바닥면은 평평하며, 웅덩이, 요철 등이 없음.
- 옥외놀이터에 설치된 고정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함.
-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등은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적재물(목재더미, 파손된 가구 등)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

●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 전선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모든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이동식 콘센트 포함)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덮개로 덮여져 있음.
- 전선줄 등은 영유아가 잡아 당기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음.
- 선풍기 등을 벽면에 설치한 경우, 전선이 벽면에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음.

③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관찰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 정수기에서 뜨거운 온수가 나와 화상의 위험이 없도록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④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

관찰

- 원장실, 교사실 등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성인의 보호 없이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음.
-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어린이집 구조상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

3-1-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평가내용	① 보육실 내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②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③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④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보육실 내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관찰

- 보육실 내 모든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은 파손된 부분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실물자료는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②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관찰

- 실내외 공간의 모든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은 파손된 부분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자전거, 탈것 등의 이동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태임.

③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관찰

- 보육실 내 모든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함.
- 영유아의 손이 닿는 위치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영아(만0-1세)가 삼킬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놀잇감이나 활동자료가 없음.

④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관찰

- 실내외 공간의 모든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함.
- 영유아의 손이 닿는 위치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영아(만0-1세)가 삼킬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놀잇감이나 활동자료가 없음.

위험한 물건의 예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 작업 시 자르거나 찌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어항수질 개선제, 각종 스프레이, 침핀, 건전지, 놀잇감으로 제시된 화장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립스틱, 매니큐어 등)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 비상약품함,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 삽, 호미 등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 영아(만0-1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
  -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블록이나 구슬, 솜공 등)
  - 직접 활동자료로 제공되거나, 영아가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콩, 팥, 은행, 도토리 등)
- 전기포트. 밥솥 등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건

3-2 | 급·간식

영유아기는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어린이집에서는 양질의 급·간식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발달에 절대적인 요소로, 영유아는 청결하게 조리된 질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여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이루고, 면역력을 키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의 급·간식 시간을 즐겁게 경험함 으로써 하루의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얻으며, 쾌적한 신체여건을 유지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일과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수립된 식단을 토대로 영유아의 기호에 맞게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식자재의 구입, 보관, 조리 및 배식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이 제공되는지,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 공간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조리 및 배식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Y □N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Y □N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함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양, 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함 ③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함 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함

기록

- 영양사(임용된 영양사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표(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포함)를 사용하고 있음.
  - 재원하고 있는 영아의 월령,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영아용 식단(이유식)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토요일 운영 시 급·간식 식단표에 토요일 식단이 포함되어 있음.
- 실제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는 계획된 식단과 일치함.

관찰

- 사전에 수립된 식단과 실제 제공된 급·간식의 내용이 일치함.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양, 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함

관찰

- 영유아의 연령, 개별요구에 맞추어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함.
  - 배식할 음식은 여분이 있어 더 먹기를 원하는 영유아에게는 추가로 배식함.
- 제공된 음식물은 조각이 크지 않아 영유아가 쉽게 먹을 수 있음.
- 제공된 음식물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맵고 짜지 않게 조리되어 자극적이지 않음.
- 영아의 월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이유식의 조리형태(유동식, 반고형식, 고형식)가 달라짐.

③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함

기록

- 급·간식을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자연식품 위주로 제공함.
  - 조리 절차가 간단하고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라면, 자장면 등)이나 냉동식품, 탄산음료, 과자류가 50% 이상 포함되지 않음.

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기록

- 어린이집 차원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함(오리엔테이션, 운영방침, 가정통신문 등).
- 보호자에게 안내한 자료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실질적인 대처방법(대체음식 제공 등)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이 있음.
-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이 이루어진 기록(보육일지 등)이 있음.

면담

- **(공통)**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 **(공통)** 지침의 내용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였는가?
- **(공통)** 재원 중인 영유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가? 어떠한 종류인가?
- **(공통)** 해당 영유아를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필수 ②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필수 ③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과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 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함 ④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필수

관찰

- 모든 식자재는 외관, 색상, 냄새 등을 확인했을 때 변질되지 않은 상태임.
- 구입한 식자재는 육안 검수 후 밀봉하여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냉장·냉동보관함.
- 식자재 보관 장소(창고, 싱크대, 베란다 등)는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냉하며 청결함.
  - 식자재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을 경우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음.

②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필수

관찰

- 어린이집 내의 식품(식자재 등)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전혀 없음.
  - 평정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모든 식품(수입식품 포함)
    ※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식품에 한함), 커피는 제외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평정대상에 포함됨(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가정어린이집에서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식자재는 평정대상에 포함됨.

③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과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함

관찰

- 조리실 바닥, 벽, 천장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깨끗하고, 작업 후 바닥이 건조하게 유지됨.
- 조리실의 창문 및 실외로 직접 연결된 모든 문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으며 파손 없이 청결함.
- 개수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식기수납장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주방가전(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기타 소형 가전제품 등)은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후드가 환기구에 잘 연결되어 있고, 후드와 환풍기는 정상 작동하며 외관 및 주변이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쓰레기통과 그 주변이 청결하며, 모든 하수구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조리실을 자주 환기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

④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관찰

- 식기류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은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도마와 칼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 식수대와 컵 등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함.
- 식수대에 청결한 컵을 비치하여 사용 전후로 구분하거나, 영유아별로 개별 컵을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청결 상태를 확인, 관리함.
- 영아를 위한 수유용 젖병과 젖꼭지는 1회 사용 후 소독하여 관리함.

면담

- **(조리원)** 도마와 칼은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②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③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필수 ④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관찰

-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조리원,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 등)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음.
  - 전용 앞치마(또는 위생복), 전용 머릿수건(또는 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또는 위생화)이나 덧신을 착용함.
  -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은 조리실 내에서만 사용함.
    ※ 단, 실내 공간과 조리공간의 바닥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조리 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음.
- 식재료 준비 작업은 준비대나 조리대에서 하며, 식재료의 세척과 절단 등 전처리 작업이 청결하게 이루어짐.
- 조리 중(전처리 작업 포함)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맛보기는 별도 숟가락을 사용함.

②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관찰

- 교사는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음.
-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도구(집게, 가위 등)를 사용함.

- 맨손으로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
- 하나의 배식도구(집게 등)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
- 하나의 가위로 여러 가지 음식을 자르지 않음.
-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포크 등으로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

-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함.
  - 공동접시를 사용하여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함께 먹지 않음.

③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필수

관찰

-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1회 조리된 음식을 배식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함.

면담

- **(교사, 조리원)** 당일 급·간식의 배식을 완료한 후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교사, 조리원)** 전날 조리된 음식이 재배식된 경우가 있는가?

④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관찰

- 영유아가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보육실 또는 층별로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함.
- 마실 물은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하며, 정수기 사용 시 필터와 꼭지의 위생관리가 이루어짐.
-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하며, 영아용 분유는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함.
- 영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하며, 먹다 남은 모유나 우유는 즉시 폐기함.

3-3 |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영유아는 위생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영유아는 발달수준에 적합한 건강·영양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관하여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교직원 역시 건강 관련 교육 및 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쾌적한 여건에서 영유아 보육에 임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손 씻기와 양치질 등의 위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이를 사려 깊게 파악하여 심신을 돌보아주고 투약 등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하루 일과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해주어야 한다. 또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정해 이를 따름으로써 영유아들이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상시적으로 건강 및 영양교육을 받아 이를 실천함으로써 영유아와 자신의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영유아와 교직원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실천하는지, 교사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히 지원하는지,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 Y □ N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 Y □ N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②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③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④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관찰

-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기저귀 갈이를 연속으로 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손 씻기의 대안으로 중간 시점마다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음.

교사가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

- 영유아에게 음식을 먹이기 전(점심식사, 오전·오후간식 전)
- 음식을 다루거나 먹고 마실 때
- 바깥놀이 후
- 변기 사용 후,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영유아의 변기 사용을 도와준 후
- 기타
  - 투약을 하기 전(특히, 안약 투약 전)
  - 상처를 소독하거나 밴드를 붙이기 전
  - 애완동물을 만진 후
  - 쓰레기통을 만지거나 사용한 후
  - 피, 토사물, 코 흘린 것 등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 손이 더러운 경우 등

②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관찰

-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손 씻기를 지원함.

영유아가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

- 음식을 먹기 전(점심식사, 오전·오후간식 전)
- 바깥놀이 후
- 대·소변 이후
- 기타
  - 손이 더러운 경우
  - 애완동물을 만진 후
  - 피, 토사물, 코 흘린 것 등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등

③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관찰

- 모든 영유아는 점심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음.
-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닦기를 지원함.
- 칫솔과 양치컵은 영유아별로 구비하며 사용 후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 건조시킴.

④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함

관찰

- 교사가 영유아의 배변 뒤처리를 해줄 경우 휴지 등으로 충분히 닦고, 사용한 휴지 등은 즉시 휴지통에 넣어 2차 오염을 방지함.
-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는 영아의 엉덩이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줌.
- 배변 실수한 영유아의 뒤처리를 해 줄 때에는 가능한 물로 씻기고 여벌 옷으로 갈아입힘.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평가내용	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함 ②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함 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④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로 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함

기록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처리 절차와 교직원 업무분장이 포함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사고로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이 최소 3가지 이상 포함), 교직원 업무분장

②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함

관찰

- 교사는 등원하는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콧물, 눈곱, 발진, 기분상태 등)를 눈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이마의 열을 재어보거나 영유아에게 직접 묻는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
-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전언(전화, 알림장 등)으로 확인함.
- 교사는 일과 중 평소와 다른 모습(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처지거나, 힘들어하거나, 움직임이 느리거나, 활동 중 조용히 있거나, 짜증을 내거나, 과도하게 흥분해 있거나, 피곤해서 또래와 쉽게 다투거나, 울고 보채는 등)을 보이는 영유아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봄.
- 교사는 휴식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을 경우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지원함.
- 질병으로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침에 따라 조치함.
  - 감기 초기 등 아픈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귀가조치하지 않는 경우, 하원 시 알림장에 기재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림.
  - 이미 발병하여 약을 가지고 등원한 영유아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을 경우, 즉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증상을 전화로 알림.

- 교사는 하원하는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눈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이마의 열을 재어보거나 영유아에게 직접 묻는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

면담

- **(공통)** 아픈 영유아가 발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호자에게 어떻게 알리는가?
- **(공통)** 영유아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관찰

-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보관함.
-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함.
- 투약한 내용을 기록하여 부모에게 보고함.

기록

-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 관련 기록(필수기재사항 포함)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투약의뢰)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시간(횟수), 의뢰자명
  - (투약보고) 투약 여부, 투약자(확인)

  ※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는 알림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알림장), 대화수첩, 문자메시지 등 활용 가능

④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로 관리함

관찰

- 어린이집 내에 비상약품(의약품 포함)을 구비하고 있음.
- 실외용 비상약품(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견학,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지참하여 활용함.
- 모든 약품에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고, 이를 경과하지 않음.

면담

- **(교사)** 견학,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실외용 비상약품을 별도로 구비하여 지참하는가?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내용	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④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기록

- 모든 영유아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 내역으로 확인 가능함.
  ※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신체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 등으로 갈음하여 비치할 수 있음.
- 모든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어 구비됨.
  ※ 필수기재사항 : 보호자의 비상연락처, 의료기관, 보호자 서명

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영유아

관찰

- 일상적 양육 및 보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에게 건강과 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함.
-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대집단이 아닌 소집단이나 개별로 이루어짐.
  - 예 : 바깥놀이, 손 씻기와 이 닦기, 수면, 편식하지 않고 먹기, 청결한 몸 관리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

기록

-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제로 보육활동을 실행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일상적 양육을 통해 건강·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관찰일지 등).

면담

- **(교사)** 일과 내에서 영유아에게 건강·영양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 **(교사)** 일과 중 관련 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 **(교사)** 영아(만0-1세, 만2세)에게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건강·영양과 관련하여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가?

보육교직원

기록

-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조리원
  - 내용 : 영유아 건강·영양 교육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지도방법 등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면담

- **(교사)**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영양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 **(교사)** 건강·영양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 **(교사)** 건강·영양 교육을 받고 영유아 보육과정 운영이나 일상생활 지도에 어떻게 적용해 보았는가?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기록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대상 : 임용된 보육교직원,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어린이집 보육실습생,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 파견자 등

④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함

기록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필수기재사항 포함)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증상,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영유아 및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

-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 외에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증상,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한 자료가 있음.

관찰

- 어린이집 운영 시 감염병 관리수칙을 준수하고 있음.

면담

- **(공통)** 부모가 감염병에 걸린 영유아를 등원시킬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공통)**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공통)** 원장이나 교사 자신이 감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3-4 | 등·하원의 안전

어린이집에서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영유아는 성인의 안전한 보호 하에서 어린이집 일과를 즐겁게 경험하고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 시 어린이집과 지정된 보호자 간 영유아의 인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인계절차와 관련 규칙을 수립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하고 일과 중 상시 모든 영유아를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공간 이동이나 일과 전이 시에는 영유아 안전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가능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등·하원이나 견학 등)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요건을 갖춘 운전자 및 책임 있는 성인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교사가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고 인계 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하는지, 영유아가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는지,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3-4-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 Y □ N
3-4-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 Y □ N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4-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평가내용	①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②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음 ③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함 ④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필수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①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기록

-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귀가동의서 내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 포함 가능

- 영유아 인계규정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지정된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인계한다는 내용, (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

②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음

기록

- 모든 원아의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음.
- 귀가동의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

③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함

관찰

- 교사는 오전 일정 시간에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함.

  -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결석 사유 확인 등을 위해 오전 중에 가정에 연락을 취함.

면담

- **(공통)** 오늘 등원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는가? 사유는 무엇인가?
- **(공통)** 등원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 **(공통)**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별도의 연락 없이 결석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④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필수

관찰

- 어린이집 하원 시 모든 영유아(차량 이용 영유아 포함)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함.
- 지정된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사전에 보호자와의 통화나 서명으로 미리 확인을 받음.
- 혼자 등·하원하는 영유아가 없음.

면담

- **(공통)** 하원 차량 운행 시,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 **(공통)** 보호자가 영유아를 혼자 하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공통)** 영유아가 혼자 등·하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3-4-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평가내용	①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함 ② 교사는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함 ③ 통합보육 시 담당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함 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필수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①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함

관찰

- 보육실 환경은 교사가 전체 영유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교사는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한 많은 영유아를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함.
- 교사는 일부 영유아와 활동을 하고 있어도 주기적으로 전체 영유아를 살펴보는 등 전체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 영유아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보육실 밖으로 나갈 때는 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고, 영유아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살펴봄.
  - 돌연사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낮잠을 자는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함.
  - 교사가 영아(만0-1세, 만2세)의 기저귀를 갈거나 우유를 타는 등 특정 행동에 몰두해 있을 때에도 자주 모든 영아를 살핌.

② 교사는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함

관찰

- 교사는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가 안전한지 확인함.
  - 일과를 시작할 때, 전이활동 후, 보육실에서 유희실, 화장실 등으로 이동 시,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 등
- 산책이나 견학 등을 위해 영유아와 함께 어린이집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영유아가 교사의 보호 하에 있도록 유의하여 살펴봄.

③ 통합보육 시 담당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함

- 통합보육 시 담임교사는 담당교사에게 인계할 영유아의 정보(이름, 인계할 보호자)와 특이사항(하루일과의 특이사항, 건강상태, 부모전달사항, 투약여부 등)에 대해 전달하여야 함.

관찰

- 통합보육 시 담당교사는 담임교사로부터 영유아를 인계받을 때 영유아의 정보(이름, 인계할 보호자)와 특이사항에 대해 전달받음.
  - 영유아별 하루일과의 특이사항, 건강상태, 부모전달사항, 투약여부 등에 대해 전달받음.

면담

- **(공통)** 통합보육은 몇 시부터 이루어지는가?
- **(공통)** 통합보육 시 인계되는 영유아에 대한 특이사항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필수

관찰

- 교사는 영유아만 남겨두고 활동공간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음.
- 교사가 등·하원 지도, 휴게시간 사용 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활동공간에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나 다른 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과 교체한 후 자리를 비움.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평가내용	①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② 운전자는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함 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필수
평정기준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Y로 평정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①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관찰

- 등·하원용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음.
  - 안전수칙에는 운전자 및 동승교사의 차량운행 관련 준수사항, 영유아 안전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차량 내부에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가 구비되어 있음.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충분함.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I 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단,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 이상인 경우에 한해 W3 또는 II그룹 제품 사용 가능
-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차량 내부에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고, 유효기간 내로 관리되고 있음.

면담

- **(공통 / 운전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공통 / 운전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매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등·하원용 차량이란?

- 등·하원용 차량은 등·하원용으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어린이집 소유 차량, 지입 및 대여 차량도 모두 포함됨.

참고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의 올바른 선택방법

1.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2.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선택 방법은?

1) 먼저 통학차량의 승객석 안전벨트 종류를 확인한다.
   (Ⓐ 2점식 안전벨트 Ⓑ 3점식 안전벨트)
2) 확인된 안전벨트 종류에 맞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선택한다.
   Ⓐ 2점식 벨트 → W2
   Ⓑ 3점식 벨트 → W1, W2
3) 안전인증(KC)된 제품인지 확인한다(안전인증서, 인증번호).
4) 제품 사용설명서를 설치 전 자세히 읽어보고, 안전하게 장착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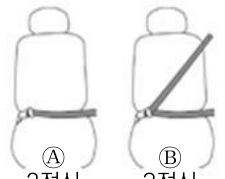

3. 안전인증(KC)이란?

안전인증번호 : 00000000

안 전 인 증

2011년 이전에 실시한 공산품 안전인증 마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사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 검사기준

〈변경 전〉

구 분	체중 범위(kg)
W1	10kg 미만
W2	9kg ~ 18kg 이하
W3	15kg ~ 25kg 이하
W4	22kg 이상

〈변경 후〉

구 분	체중 범위(kg)
0그룹	10kg 미만
0+그룹	13kg 미만
Ⅰ그룹	9kg ~ 18kg 이하
Ⅱ그룹	15kg ~ 25kg 이하
Ⅲ그룹	22kg ~ 36kg 이하

※ '영아용 보호장구'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중 영아의 체중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 0, 0+, Ⅰ그룹)을 선택, 사용하여야 함.

② 운전자는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함

기록

- 차량별로 안전점검표가 마련되어 있고, 운전자가 매일 차량 이상 유무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 기록이 있음.

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기록

- 운전자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증빙하는 교육확인증이 있음.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한 신규 또는 정기 안전교육에 한함.

-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에 대해 차량 등·하원 지도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구분	내용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교육확인증 비치 방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정확히 비치해야 한다.
    · 운영자 교육확인증 :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 운전자 교육확인증 :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필수

관찰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 있는 성인(원장, 교사 등)이 동승함.
-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이 출발함.
-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은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후 영유아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함.
-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은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고 하차함.
-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운전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함.

면담

- **(공통)** 차량 운행 시 동승하는 성인은 누구인가?
- **(공통)**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발견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공통)**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어떻게 도와주는가?

  ※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면담으로 확인
- **(공통)** 차량 탑승 영유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영유아의 하차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가?

3-5 |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영유아와 교직원이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영유아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연령 등 발달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직원 업무분장을 갖추고, 평상시 교직원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교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으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 영유아가 아동학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육교직원은 안전설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지,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하는지,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Y □ N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 Y □ N
3-5-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③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함 ④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기록

- 연간 영유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영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기준(교육내용, 실시주기)을 준수하고 있음.
-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함.
  - 영아의 경우,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함.

면담

- **(교사)**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으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영유아 안전교육 * 출처 :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음(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

내용	실시주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및 약물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 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기록

- 영유아가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월 1회 이상 있음.

  ※ 지진 등 재난대피훈련 등도 포함 가능

- 소방대피훈련 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어린이집 건물 외부로 대피함.

면담

- **(공통)** 소방대피훈련은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③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놀잇감을 던지거나 모래를 또래에게 뿌리는 등의 위험행동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함.
-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기구를 정해진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거나 안내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함.

④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함

관찰

- 교사는 실외활동을 하는 영유아에게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의 예

- 여름철에는 날씨가 너무 더운 시간을 피해 실외활동 시간을 조정하도록 함.
-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는 영유아가 모자를 쓰거나 차양막 또는 그늘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함.
-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 영유아가 바깥놀이나 물놀이를 장시간 할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
-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 산책을 할 경우 영유아는 필요에 따라 우산, 비옷, 장화 등을 갖추고 있음.
- 추운 겨울날 바깥놀이를 할 때 영유아는 따뜻한 겉옷과 장갑 등을 갖추고 있음.
- 황사가 있거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신체활동으로 대체함.

면담

- **(공통)**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 바깥놀이를 나갈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는가?
- **(공통)** 황사가 있거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농도가 높은 날에는 어떻게 조치하는가?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평가내용	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②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필수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기록

-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안전교육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면담

- **(공통)** 언제,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는가?
- **(공통)**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후 영유아를 대하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②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기록

- 어린이집에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비상시 대처방안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비상사태를 대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 대피요령

면담

- **(공통)**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분장된 업무 중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 화재 발생 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기록

- 보육교직원 중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이수증(또는 자격증)이 있음.
  - 교육과정 내 실습이 포함되어 있음.
    ※ 이수증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함. 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함.

면담

- **(교육참여자)** 교육받은 내용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인가?
- **(교육참여자)** 응급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 **(교육참여자)** 영유아 질식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필수

기록

-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 등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있음.

관찰

- 보육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음.

체벌의 범위

- 훈육의 목적으로 성인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에게 신체적 압박을 가하는 것
  - 예 : 때리거나, 꼬집거나, 약하게 깨무는 행위 등

면담

- **(공통)**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내용 중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
- **(공통)**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 **(공통)**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
- **(공통)**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멍, 상처 등 신체적 상흔, 무단 결석, 명확한 사유 없이 퇴소 신청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공통)**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통)**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이 있는가?

3-5-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를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②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소화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③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④ 보육교직원은 안전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음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를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관찰

-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는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음.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임.
-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는 적재물이나 위험한 물건 등이 없어 비상시 원활히 대피할 수 있게 관리되고 있음.
-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피난구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함.

②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소화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관찰

- 각 층마다 소화기를 구비함.
-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 각 층에 투척용 소화기를 추가로 마련한 경우, 투척용 소화기도 파손 및 내용물이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③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관찰

-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음.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천장에 부착해야 함.
  ※ 해당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추가 설치 불필요
-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가스누설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음.

④ **보육교직원은 안전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 **(공통)** 지금 이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기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가?
- **(공통)**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 **(공통)** 비상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여는가?

4 교직원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대표적인 인적 환경으로, 영유아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중의 놀이와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이처럼 보육교직원의 역량은 보육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원장은 자신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은 개인의 직무, 경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인용 공간 및 설비의 마련과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기회 제공을 통해 보육교직원을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처우 및 복지를 제공하여 직무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조건이 충족될 때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영유아에게 보다 우수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 영역은 총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의 리더십,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지표	
4 - 1	원장의 리더십
4 - 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4 - 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4 - 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영역 등급기준

- **우 수** 4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3개 이상
- **보 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선필요** 4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4-1 원장의 리더십

어린이집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간관계가 밀접한 조직으로, 원장의 리더십이 보육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따라서 원장은 질 높은 보육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원장 자신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원장이 리더로서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실천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교사회의나 면담 등 모든 보육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정례화된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 Y □ N
4-1-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 Y □ N
4-1-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평가내용	①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②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면담

- **(원장)**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가?
- **(원장)**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②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면담

- **(원장)**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기록

- 평가 직전 월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 대상 : 종일제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제외)
    - 예 : 2019년 11월에 현장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10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함.

  ※ 개원 2년 미만 어린이집은 최초 원아 입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교사가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

  ※ 교사가 3인 이하인 어린이집은 2년 이상 근속 교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인정함.

4-1-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평가내용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임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함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임

관찰

- 교사에게 “○○ 선생님” 등 개별적인 호칭을 사용함.
- 교사에게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음.

면담

- **(교사)** 원장은 평소 모든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로 대하는가?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함

면담

- **(원장)** 교사회의 등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안건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가?
- **(교사)** 원장은 안건이나 사안을 결정할 때 교사에게 의견을 묻는가? 원장은 회의에서 교사가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주의 깊게 듣는가?
- **(공통)**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가 제시한 의견 중 수용된 것은 무엇인가?

4-1-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함 ②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되어 각자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음 ③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실시함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함

기록

- 교사회의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이루어지고, 회의 내용 관련 기록이 있음.

면담

- **(공통)** 최근 교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②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되어 각자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음

기록

- 어린이집 업무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적절하게 분장되어 문서화되어 있음.
- 비품 및 도서 관리, 실외시설 관리 등과 같은 공동업무는 업무 내용에 따라 보육교직원에게 분담하고, 이를 업무분장표를 통해 공유하고 있음.

면담

- **(공통)**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업무분장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는가?

③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실시함

기록

-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면담

- **(공통)** 원장/보육교직원과 면담을 정기적으로 하는가? 정기 면담의 시기와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공통)** 가장 최근에 개별면담을 한 시기는 언제인가?
- **(공통)** 면담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
- **(교사)** 원장과의 면담은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

4-2 |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보육교사를 배려한 근무환경은 교사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며, 교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만족감을 높이고 질 높은 보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장시간 보육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교사를 위해 성인용 공간과 설비를 마련하여 불편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업무지원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여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무 외의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여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성인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어린이집에 교사실과 같은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을 위한 설비를 마련하고 있는지, 성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4-2-1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 Y □ N
4-2-2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 Y □ N
4-2-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4-2-1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평정기준	1개를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관찰

-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함.
  - ㉠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함께 모여 회의를 하거나 활동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교사실)이 마련되어 있음.
    - 교사실은 영유아 활동공간과 분리된 공간으로, 업무지원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교직원들이 함께 사용함.
  - ㉡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음.
  - ㉢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교사실, 베란다, 조리실 등)에 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탁자나 휴식용 의자, 쿠션 등의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4-2-2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음 ②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기타 업무지원 설비(컴퓨터, 프린트 등)를 마련하고 있음
평정기준	2개를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음

관찰

-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이 보육실이나 교사실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마련되어 있음.
- 사물함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교재교구 등의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해두지 않음.

②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기타 업무지원 설비(컴퓨터, 프린트 등)를 마련하고 있음

관찰

-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음.
-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카메라, 캠코더, 빔 프로젝터, OHP 등 보육업무에 필요한 지원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 보육실이나 교사실, 자료실 등 실제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4-2-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보육교직원, 부모 및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음
평정기준	1개를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보육교직원, 부모 및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음

관찰

-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함.
  - ㉠ 부모와 보육교직원 등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에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에 성인용 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 내 화장실이 1개인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평정에서 제외함.

4-3 |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보육교직원은 부모와 더불어 영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을 때 근무의욕이 향상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의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복무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근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보육 교사는 적절한 처우와 재교육, 기타 복지혜택 등을 제공받을 때, 직무만족도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 보람, 소속감, 근무의욕 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특히 직무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소진될 수 있는 보육업무의 특성상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보수, 근무 및 휴게시간, 휴가 등의 근무조건과 근무 중 기대되는 역할은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한 후 명문화되어야 하며, 복지 등의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직무 및 소속된 조직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4-3-1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 Y □ N
4-3-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 Y □ N
4-3-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4-3-1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③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평정기준	3개를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음

기록

- 모든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상호 날인함.
  - 대상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원장도 근로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됨.
- 근로계약서에는 개별 보육교직원의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면담

- **(공통)** 근로계약에 대한 동의와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공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등을 사용하는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기록

-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취업규칙(복무규정)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취업규칙(복무규정)은 보육교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보육교직원에게 회람하여 내용을 공지하고 있음.

면담

- **(교사)** 취업규칙(복무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
- **(교사)**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③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기록

-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준수함.
  - 보수 관련 규정에는 임금, 경력,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임금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설명자료 참조.
-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함.

면담

- **(원장)** 교사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였는가?
- **(교사)** 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는가? 규정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가?

4-3-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
평가내용	①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②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
평정기준	2개를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면담

- **(공통)**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는가?

  ※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와 별도로 제공해야 함.

②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

면담

- **(공통)** 보육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가?

4-3-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음 ② 복지 혜택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골고루 제공됨
평정기준	2개를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음

기록

-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음.
  - 복지를 위한 노력의 예 : 포상휴가, 상여금, 명절선물, 보육교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면담

- **(공통)**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가? 어떤 제도인가?

② 복지 혜택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골고루 제공됨

기록

-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골고루 제공되어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없음.

면담

- **(공통)** 어린이집의 복지 혜택이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4-4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운영철학을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육교직원이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경력과 직무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이외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객관적인 업무평가와 제언 등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적절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지,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결과
4-4-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Y □ N
4-4-2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Y □ N
4-4-3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Y □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 **보 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4-4-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평정기준	2개를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기록

- 연간 교육 계획이 보육교직원의 경력, 직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음.
  ※ 원장, 보육교직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직무교육과 기타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

면담

- **(원장)** 연간 보육교직원 교육 계획 수립 시 어떤 점을 고려하는가?

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기록

- 원장과 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음.
  - 증빙서류 :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이수확인증,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경력증명서 등
    ※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에 의한 교육에 한함.
- 원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교육 외의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였음.
  - 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 내용 :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교육(학회, 워크숍,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 온라인 교육 등
    ※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이내 실시기록 확인

면담

- **(공통)** 가장 최근에 직무교육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가? 어떤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공통)** 가장 최근에 참석한 교육은 언제이며, 어떤 내용이었는가?

4-4-2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평정기준	1개를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기록

- 원장이나 외부전문가가 일과 및 놀이 중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찰한 후 지원한 기록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있음.

  - 대상 : 반을 맡고 있는 종일제 보육교사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관찰 및 지원 관련 기록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필수기재사항 : 일시, 관찰자, 관찰내용, 평가 및 지원 내용

면담

- **(공통)** 교사의 상호작용 관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공통)** 상호작용 관찰 후 지원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4-4-3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평정기준	1개를 충족해야 Y로 평정

①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기록

- 원장이 실시한 근무평가 기록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있음.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자기평가, 동료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평가로 인정되지 않음

면담

- **(원장)**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원장)**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가?

보육교직원의 근무평가 시 고려사항

-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실행한 업무의 수준과 앞으로의 시행에서 보완해야할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료가 됨.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 평가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근무평가의 내용으로 업무태도(근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동료관계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장은 모든 교직원이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
- 평가시기를 예고하고,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부 록

1.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안내
2.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안내

1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안내

1.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①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항목별로 Y 또는 N에 체크합니다.

※ 평가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지표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이 표기됨

※ 평가지표 중 '우수', '개선필요' 등급 지표 개수에 따라 영역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이 표기됨

② 영역별 총평은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강점 및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기록합니다.

※ 필요시 1,000자 이내로 작성

※ 4개 평가영역의 등급 종류(우수, 보통, 개선필요) 및 개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 B, C, D 중 1개)이 표기됨

2.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예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평 가 내 용		Y	N
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①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②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함 ③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줌 ④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 4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①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 ②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음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2개 (Y개수)
	●	○	○	

1영역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	○	○

(1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1영역의 5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강점 및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 경우 기록합니다. (※ 필요시 1,000자 이내로 작성)*

영 역		영역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	□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	□
3	건강·안전	□	■	□
4	교직원	■	□	□
소 계		3	1	0

어린이집 등급	A	B	C	D
	○	●	○	○

3.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보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전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또는 [이전]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제출하기] 버튼 클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나의 상태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에서 [작성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는 [세부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체점검보고서

어린이집 정보

참여유형 / 기수		작성일	
어린이집 ID		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어린이집 유형		정원 / 현원	/
어린이집 특성	☐ 일반 ☐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방과후통합 ☐ 시간연장형 ☐ 휴일보육 ☐ 24시간 ☐ 시간제보육		
정부지원 여부	☐ 지원 ☐ 미지원	농어촌특례 여부	☐ 예 ☐ 아니오

※ 어린이집 정보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설치운영관리 정보와 자동 연동되어 표시됨

본 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연차별 자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자체점검위원회는 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

년 월 일

원장명: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확인

- 해당 어린이집에서 평가대상 확정통보(2차)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여부를 체크하고,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법 조항을 확인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이력 : ☐ 있음 ☐ 없음

항목	관련기준	해당여부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원장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
원장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
보육교사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

항목	관련기준	해당여부
보육교사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
금고 이상의 형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차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장명: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평 가 내 용		Y	N
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①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②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함 ③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줌 ④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 4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①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 ②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음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평 가 내 용	Y	N
1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①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하여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함 ②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을 반별로 수립함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①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함 ②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③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함 ④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 * 4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매일 실내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6시간 이하 이용(맞춤반 영아) : 매일 1시간 이상 - 6시간 초과 이용(종일반 영아, 유아) : 매일 2시간 이상 ②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하여 교과목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4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영아 만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 만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유아 매일 1시간 이상 장애아전문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	☐

평 가 내 용		Y	N
5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①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②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음 ③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됨 *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Y로 평정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6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음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장애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와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하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1-3 놀이 및 활동 지원

	평 가 내 용	Y	N
1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①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여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영아 : 의도적인 집단 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②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함 ③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 ①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함 ②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함 ③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①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 ②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③ 놀잇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평가내용	Y	N
1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①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반응함 ②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기분을 파악하여 언어적, 비언적으로 반응하며 수용함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①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②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함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① 반별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있음 ② 교사는 영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가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격려함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방식을 사용한다.** ①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놀잇감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 ②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령에 적합하게 개입함 ③ 영유아가 다양한 긍정적 해결방안을 사용하도록 격려함(요청, 교환, 함께 쓰기, 번갈아하기)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1-5 보육과정 평가

	평가내용	Y	N
1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내용을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한다.**		
	①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평가기록이 있음 ② 보육일지에 평가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개별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①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②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함 ③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지원, 부모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음 ④ 장애영유아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 자료를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음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장애영유아 4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①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 ②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함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1영역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	○	○

(1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1영역의 5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강점 및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 경우 기록합니다. (※ 필요시 1,000자 이내로 작성)*

2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평가내용	Y	N
1	**보육실 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하여 구성한다.** ①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반영한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②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다.** ①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 영유아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함 ② 영아 기저귀 갈이, 수유공간 등 영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갈이 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③ 장애아전문 실내 시설 및 설비는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도구가 마련되어 있음 * 영아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영아가 없는 경우) 1개(①) 충족하면 Y로 평정 * 장애아전문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영아가 없는 경우) 2개(①,③) 충족하면 Y로 평정	□	□
3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①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공간, 양호공간, 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음 ②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음 ③ 영유아의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4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①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 *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평가내용		Y	N
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	□
	①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음 ②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2개 중 1개를 충족해야 Y로 평정		
2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	□
	①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② 놀이 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크기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 ③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3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	□	□
	① 바깥놀이 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짐 ② 바깥놀이 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짐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2-3 기관 운영

	평가내용	Y	N
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①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②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음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		
	①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②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됨 ③ 17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자유놀이 등이 운영되고 있음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①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	□
4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음 ② 신입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평가내용	Y	N
1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다양한 부모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① 부모가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② 부모가 자원봉사, 현장학습 동반, 급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참여하고 있음 ③ 부모교육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		
	① 평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음 ②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내용을 기록, 관리함 ③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2영역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	○	○

(2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2영역의 4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강점 및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 경우 기록합니다. (필요시 1,000자 이내로 작성)*

3영역. 건강·안전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평가내용	Y	N
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	☐
	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	☐	☐
	②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함	☐	☐
	③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함	☐	☐
	④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	☐
	*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	☐
	①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
	②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
	③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
	④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	☐	☐
	*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
	① 보육실 내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	☐
	②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	☐
	③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	☐
	④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	☐
	*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3-2 급·간식

	평가내용	Y	N
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	☐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함	☐	☐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양, 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함	☐	☐
	③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함	☐	☐
	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	☐
	*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필수	☐	☐
	②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필수	☐	☐
	③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과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함	☐	☐
	④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
	*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평정		
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	☐
	②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	☐
	③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필수	☐	☐
	④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
	*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평정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평가내용	Y	N
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	☐
	①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
	②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
	③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
	④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함	☐	☐
	*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	☐
	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함	☐	☐
	②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함	☐	☐
	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	☐
	④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로 관리함	☐	☐
	*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	☐
	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	☐
	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	☐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
	④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함	☐	☐
	*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3-4 등·하원의 안전

	평가내용	Y	N
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	☐
	①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	☐
	②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음	☐	☐
	③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함	☐	☐
	④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필수	☐	☐
	*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평정		
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	☐
	①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함	☐	☐
	② 교사는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함	☐	☐
	③ 통합보육 시 담당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함	☐	☐
	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필수	☐	☐
	*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평정		
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	☐
	①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	☐
	② 운전자는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함	☐	☐
	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	☐
	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필수	☐	☐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Y로 평정 *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평정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평가내용	Y	N
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
	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	☐
	③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함	☐	☐
	④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함	☐	☐
	*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	☐
	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	☐
	②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	☐
	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	☐
	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필수	☐	☐
	*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평정		
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
	①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를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
	②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소화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
	③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
	④ 보육교직원은 안전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음	☐	☐
	*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3영역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	○	○

(3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3영역의 5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강점 및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 경우 기록합니다. (※ 필요시 1,000자 이내로 작성)*

4영역. 교직원

4-1 원장의 리더십

	평가내용	Y	N
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①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②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임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함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함 ②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되어 각자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음 ③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실시함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평가내용		Y	N
1	**교사를 위한 별도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①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①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음 ②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기타 업무지원 설비(컴퓨터, 프린트 등)를 마련하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① 보육교직원, 부모 및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음 *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평가내용		Y	N
1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③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 ①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②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①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음 ② 복지 혜택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골고루 제공됨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내용	Y	N
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①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	☐
2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①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	☐
3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 1개 충족해야 Y로 평정	☐	☐

지표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4영역 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	○	○

(4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4영역의 4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강점 및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 경우 기록합니다. (※ 필요시 1,000자 이내로 작성)*

영 역		영역등급		
		우 수	보 통	개선필요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	☐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	☐
3	건강·안전	☐	☐	☐
4	교직원	☐	☐	☐
소 계				

어린이집 등급	A	B	C	D
	○	○	○	○

2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안내

1.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①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항목별로 Y 또는 N에 체크합니다.

※ 평가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지표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이 표기됨

※ 평가지표 중 '우수', '개선필요' 등급 지표 개수에 따라 영역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이 표기됨

② 영역별 총평은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강점 및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기록합니다.

※ 필요시 1,000자 이내로 작성

※ 4개 평가영역의 등급 종류(우수, 보통, 개선필요) 및 개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 B, C, D 중 1개)이 표기됨

2.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보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전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또는 [이전]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제출하기] 버튼 클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연차별 자체점검] 메뉴에서 나의 상태가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요망]에서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한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는 [세부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의 평가지표 서식은 자체점검보고서와 동일(p. 223~242)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어린이집 정보

참여유형 / 기수		작성일	
어린이집 ID		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어린이집 유형		정원 / 현원	/
어린이집 특성	☐ 일반 ☐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방과후통합 ☐ 시간연장형 ☐ 휴일보육 ☐ 24시간 ☐ 시간제보육		
정부지원 여부	☐ 지원 ☐ 미지원	농어촌특례 여부	☐ 예 ☐ 아니오

※ 어린이집 정보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설치운영관리 정보와 자동 연동되어 표시됨

본 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연차별 자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자체점검위원회는 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

년 월 일

원장명: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확인

- 해당 어린이집에서 평가대상 통보일 이후 발생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여부를 체크하고,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법 조항을 확인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이력 : ☐ 있음 ☐ 없음

항목	관련기준	해당여부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원장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
원장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
보육교사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

항목	관련기준	해당여부
보육교사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
금고 이상의 형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차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되거나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단,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처리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장명:

2019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2019년 5월 인쇄
2019년 5월 발행

발 행 인 **한국보육진흥원장**
발 행 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전 화 • 1661-5666(代) 팩 스 • 02-6901-0151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2090-6706
I S B N 978-89-98842-45-1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